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4980 호 2022. 8. 19(금)

입 법 예 고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53호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54호	강원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55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57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4

고 시

강원도 고시 제2022-277호	주천강 하천점용허가(예버등교) 고시	97
강원도 고시 제2022-278호	덕치천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물골교) 고시	98
강원도 고시 제2022-284호	2020년 제2차 강원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100
강원도 고시 제2022-285호	강원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	101
강원도 고시 제2022-28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04
강원도 고시 제2022-28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105

공 고

강원도 공고 제2022-125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06
강원도 공고 제2022-1259호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따른 집다리골자연휴양림 휴장 공고	107
강원도 공고 제2022-1268호	제74회 강원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108
강원도 공고 제2022-1269호	지방도408호선 무이~생곡간 도로확포장공사 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09
강원도 공고 제2022-1274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110

시 군 행 정

원주시 고시 제2022-330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반곡동 공동주택) 지형도면 승인고시	111
원주시 고시 제2022-333호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32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14

회 람								
--------	--	--	--	--	--	--	--	--

원주시 고시 제2022-335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2-21호)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17
강릉시 고시 제2022-210호	강릉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23
강릉시 고시 제2022-21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	124
강릉시 공고 제2022-1320호	주문진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6호광장) 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소유자 등 의견 청취 열람 · 공고	131
영월군 공고 제2022-1104호	영월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완료 공고	134
영월군 공고 제2022-1106호	영월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2단계 사업) -	135
평창군 고시 제2022-133호	평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37
평창군 고시 제2022-134호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38
고성군 고시 제2022-155호	고성 군관리계획(항만)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군계획시설 (항만: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사업)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40
고성군 공고 제2022-876호	고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고성경찰서 증축공사) 사업 공사완료 공고	143
고성군 공고 제2022-884호	고성 군계획시설(항만: 봉포항 어업인대기소 신축공사) 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144
양양군 고시 제2022-186호	양양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46

입 법 예 고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53호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민선8기 도정의 비전과 공약실천 및 신규행정 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강원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2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책기획관
- 전 화: 033-249-2265
- F A X: 033-249-4013
- e-mail: bkhgulee@korea.kr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2,343명”을 “2,34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24명”을 “131명”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63명”을 “5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040	1,652	131	4,596	113	39	450	59
정무직 계	3	-						
도지사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							1
별정직 계	9	-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8	7						
일반직 계	2,254	-						
1급	1	1						
2급	1					1		
2 ~ 3급	2	1	1					
3급	13	10		1	1	1		
3 ~ 4급	2	1						1
4급	102	62	11	7	4	3	14	1
5급 이하 소계	2,119	1,289	118	130	107	34	386	55
전문경력관 소계	15	6	1	4			4	
연구직 계	231	-						
연 구 관	48			43			5	
연 구 사	183	6		139	1		37	
지도직 계	33	-						
지 도 관	8			8				
지 도 사	25			25				
소방공무원 계	4,463	-						
소 방 감								
소 방 정	27	7		20				
소방령 이하 소계	4,436	260		4,172			4	
교육공무원 계	47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4			14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040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340명
2. 소방본부·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4,463명
3. 독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7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1명
5.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59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1]

강원도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5%이상	0.5%이내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

강원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7%이내	20%이내	33%이내	30%이내	9%이상	1%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7%이내	73%이상	28%이내	72%이상

3. 소방공무원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이내	3%이내	9%이내	10.5%이내	18.5%이내	34%이내	24%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12%이내	67%이내	12%이내	—	9%이상	—

■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040	1,652	131	4,596	113	39	450	59
정무직 계	3	—						
도지사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							1
별정직 계	9	-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8	7						
일반직 계	2,254	-						
1급	1	1						
2급	1					1		
2 ~ 3급	2	1	1					
3급	13	10		1	1	1		
3 ~ 4급	2	1						1
4급	102	62	11	7	4	3	14	1
5급 이하 소계	2,119	1,289	118	130	107	34	386	55
전문경력관 소계	15	6	1	4			4	
연구직 계	231	-						
연 구 관	48			43			5	
연 구 사	183	6		139	1		37	
지도직 계	33	-						
지 도 관	8			8				
지 도 사	25			25				
소방공무원 계	4,463	-						
소 방 감								
소 방 정	27	7		20				
소방령 이하 소계	4,436	260		4,172			4	
교육공무원 계	47	-						
총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4			14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희

제 정 안	검 토 의 건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54호

「강원도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민선8기 도정의 비전과 공약실천 및 신규행정 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강원도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구 분	정원(명)			비고
	당초(A)	변경(B)	증감(B-A)	
총 계	7,040	7,040	-	
본청(소방본부 포함)	1,686	1,652	△34	
의회사무처	124	131	7	
직속기관	4,594	4,596	2	
출장소	106	113	7	
경제자유구역청	39	39	-	
사업소	428	450	22	
합의제행정기관	63	59	△4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2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책기획관
- 전 화: 033-249-2265
- F A X: 033-249-4013
- e-mail: bkhgulee@korea.kr

강원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강원도 공무원 정원표 (총괄)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구
총 계		7,040	1,652	131	4,596	113	39	450	59
정무직	계	3	1						2
	도지사	1	1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1							1
별정직	계	8	8						
4급상당	소계	1	1						
	비서실장	1	1						
	5급상당	5	5						
	국제관계대사	1	1						
	비서관	3	3						
	정책특보	1	1						
	6급상당	1	1						
	비서	1	1						
	8급상당	1	1						
	비서	1	1						
일반직	계	2,255	1,370	131	142	112	39	404	57
1급	소계	1	1						
	관리관 · 별정	1	1						
	2급	1					1		
	이사관	1					1		
	2~3급	2	1	1					
	이사관 · 부이사관	2	1	1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구
	3급	소계	13	10		1	1	1		
		부이사관	13	10		1	1	1		
	3~4급	소계	2	1						1
		부이사관 · 서기관	2	1						1
	4급	소계	102	62	11	7	4	3	14	1
		행정	44	25	5	6	1	3	3	1
		기술	12	10			2			
		행정 · 기술	31	27		1	1		2	
		행정 · 별정	4		4					
		기술 · 농업연구	2						2	
		기술 · 녹지연구	1						1	
		기술 · 수의연구	1						1	
		기술 · 어촌지도	1						1	
		기술 · 해양수산연구	1						1	
		기술 · 소방정	1						1	
		행정 · 전문경력관가군								
		행정 · 기술 · 별정	2		2					
		행정 · 기술 · 해양수산 연구	1						1	
		기술 · 농업연구 · 수의 연구	1						1	
	5급	소계	414	308	21	15	19	9	29	13
		행정	207	153	19	10	3	5	6	11
		사서	1			1				
		공업	6	6						
		녹지	13	7					6	
		수의	5	5						
		농업	11	9		1			1	
		해양수산	8				8			
		보건	3	3						
		환경	12	12						
		시설	35	32				2		1
		의무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구
	5급	방송통신	3	3						
		행정 · 사회복지	10	10						
		행정 · 사서	1	1						
		행정 · 공업	9	8		1				
		행정 · 녹지	1	1						
		행정 · 농업	8	6	1	1				
		행정 · 해양수산	5				4		1	
		행정 · 보건	5	5						
		행정 · 환경	3	3						
		행정 · 시설	22	17	1	1	1	1		1
		행정 · 방송통신	3	3						
		행정 · 별정								
		행정 · 전문경력관가군	1	1						
		행정 · 학예연구	2	1					1	
		공업 · 시설	7	3					4	
		공업 · 환경	1	1						
		공업 · 방송통신								
		공업 · 운전	1	1						
		농업 · 수의								
		농업 · 시설	1	1						
		농업 · 농업연구	2	2						
		녹지 · 환경	2	2						
		녹지 · 녹지연구	1						1	
		수의 · 수의연구	7						7	
		해양수산 · 시설	1				1			
		해양수산 · 어촌지도	1				1			
		보건 · 간호	2	2						
		보건 · 약무								
		보건 · 약무 · 간호	1	1						
		환경 · 시설	2	1				1		
		시설 · 방재안전	2	2						
		시설 · 학예연구	1	1						
		행정 · 시설 · 녹지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구
	5급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행정 · 농업 · 해양수산	1	1						
		행정 · 농업 · 농업연구	1						1	
		행정 · 시설 · 학예연구								
		행정 · 해양수산 · 환경	1				1			
		공업 · 보건 · 환경								
		공업 · 환경 · 시설	1	1						
		의무 · 보건 · 간호	1	1						
		행정 · 환경 · 공업	1	1						
		환경 · 녹지 · 환경연구 · 녹지연구	1						1	
		의무 · 보건 · 간호 · 약 무 · 수의	1	1						
	6급	소계	733	458	45	37	41	17	103	32
		행정	295	187	40	15	8	7	22	16
		세무	9	8						1
		사회복지	3	3						
		전산	12	8		3		1		
		사서	1		1					
		속기	2		2					
		공업	33	21		6		1	3	2
		농업	26	22					3	1
		녹지	28	17					10	1
		수의	11	7					4	
		해양수산	28			4	21		3	
		보건	11	9				1		1
		식품위생	1	1						
		간호	4	2		2				
		환경	18	16				1		1
		시설	97	71		2	3	4	10	7
		방재안전								
		방송통신	14	11			1	1	1	
		운전	9	3		2			4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구
	6급	행정 · 세무	2	2						
		행정 · 전산	7	6						1
		행정 · 사회복지	8	7						1
		행정 · 사서	1	1						
		행정 · 녹지	5	3					2	
		행정 · 공업	4	4						
		행정 · 농업	2	2						
		행정 · 해양수산	1		1					
		행정 · 보건	3	3						
		행정 · 환경	8	8						
		행정 · 시설	8	6					2	
		행정 · 방재안전	1	1						
		행정 · 전문경력관나군	1	1						
		전산 · 시설	1	1						
		전산 · 농업								
		사회복지 · 보건	1	1						
		공업 · 농업	1			1				
		공업 · 방송통신	1	1						
		공업 · 시설	1						1	
		공업 · 환경	1	1						
		농업 · 녹지	1					1		
		농업 · 해양수산	2	2						
		농업 · 농업연구	7						7	
		농업 · 수의	1	1						
		수의 · 수의연구	13						13	
		보건 · 간호	4	4						
		보건 · 약무	1	1						
		보건 · 환경								
		사서 · 기록연구	2	2						
		시설 · 녹지	1	1						
		시설 · 방재안전	3	3						
		해양수산 · 시설	1	1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구
	6급	해양수산 · 어촌지도	5				5			
		해양수산 · 해양수산연 구	3						3	
		행정 · 농업 · 시설	1	1						
		행정 · 농업 · 농업연구	1						1	
		행정 · 환경 · 공업	2	2						
		행정 · 시설 · 방재안전	1	1						
		농업 · 수의 · 농업연구	1						1	
		농업 · 농업연구 · 전문 경력관나군	1						1	
		사무운영	3	3						
		통신운영	3			1	2			
		기계운영								
		선박기관운영								
		선박항해운영								
		통신운영 ·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 운전	14	1	1				12	
		선박항해운영 · 선박기 관운영	1				1			
	7급	소계	635	395	27	35	22	7	141	8
		행정	226	168	14	11	4	4	18	7
		세무	5	5						
		사회복지	8	8						
		전산	11	10		1				
		사서	1			1				
		속기	5		5					
		공업	43	22	1	8		1	11	
		농업	23	14		2			7	
		녹지	22	8					14	
		수의	43	4					39	
		해양수산	21			4	11		6	
		보건	11	11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구
	7급	식품위생								
		간호	1	1						
		환경	15	15						
		시설	70	51	1		3		14	1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6	12		1			3	
		운전	8	5	1	2				
		위생	1	1						
		행정 · 세무	2	2						
		행정 · 사회복지	4	4						
		행정 · 전산	9	8	1					
		행정 · 녹지	1						1	
		행정 · 공업	4	2				1	1	
		행정 · 농업	2	2						
		행정 · 보건								
		행정 · 환경	2	2						
		행정 · 시설	12	11				1		
		행정 · 해양수산	1				1			
		행정 · 별정								
		행정 · 사무운영	1	1						
		전산 · 시설	1	1						
		전산 · 방송통신	4	3	1					
		농업 · 환경	1	1						
		농업 · 해양수산								
		농업 · 시설	1	1						
		농업 · 농촌지도								
		공업 · 환경	1	1						
		공업 · 보건	1	1						
		공업 · 시설	6	4	1				1	
		공업 · 운전	3			1			2	
		공업 · 방송통신	1	1						
		공업 · 시설관리	1			1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구
	7급	해양수산 · 시설	2				2			
		해양수산 · 어촌지도	1				1			
		해양수산 · 해양수산연 구	2						2	
		환경 · 녹지	1	1						
		환경 · 시설	2	2						
		녹지 · 시설								
		보건 · 간호	3	2		1				
		보건 · 약무	1	1						
		보건 · 환경	1	1						
		보건 · 사회복지								
		사서 · 기록연구								
		시설 · 방재안전	1	1						
		행정 · 환경 · 공업	1	1						
		행정 · 공업 · 방재안전	1	1						
		공업 · 시설 · 방재안전								
		보건 · 환경 · 시설								
		사무운영	3	1	2					
		토목운영								
		전기운영								
		통신운영								
		기계운영	3						3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농림운영	1	1						
		사육운영								
		기계운영 · 공업	1			1				
		기계운영 · 운전	18	2		1			15	
		기계운영 · 전기운영	4						4	
	8급	소계	228	109	12	19	17	1	68	2
		행정	87	65	4	3	2		12	1
		사회복지	1	1						
		전산	2	2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구
	8급	사서								
		속기	2		2					
		방호								
		공업	23	5	1	7			10	
		녹지	8	2					6	
		농업	3						3	
		해양수산	22			2	13		7	
		시설	27	12			1		14	
		방송통신	4	2		1	1			
		환경	5	5						
		보건	2	2						
		운전	7	2	1	2		1	1	
		시설관리								
		행정 · 전산	1	1						
		행정 · 사회복지								
		행정 · 공업	1			1				
		행정 · 환경								
		행정 · 보건	1	1						
		행정 · 방재안전	1	1						
		행정 · 방송통신	1	1						
		행정 · 사무운영	1							1
		행정 · 시설관리	1			1				
		공업 · 환경	1	1						
		공업 · 방송통신	1	1						
		공업 · 운전	1						1	
		공업 · 시설	1						1	
		농업 · 농업연구	1						1	
		농업 · 기계운영								
		녹지 · 시설								
		보건 · 식품위생	1	1						
		환경 · 시설	1	1						
		해양수산 · 해양수산연 구	1						1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구
	8급	사무운영	3	1	1	1				
		통신운영	2	1	1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2		1				1	
		열관리운영								
		사육운영	1						1	
		기계운영 · 공업	1						1	
		기계운영 ·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 시설관리	1			1				
		기계운영 · 운전	7						7	
		선박항해운영 · 선박기 관운영								
	9급	소계	109	19	13	24	8		45	
		행정	8	4	3	1				
		사회복지	1	1						
		숙기	3		3					
		공업	9			2			7	
		농업	4						4	
		방송통신	2				2			
		환경								
		운전	28		1	13	1		13	
		위생	1	1						
		해양수산	7			2	4		1	
		방재안전	1	1						
		시설관리	4		1				3	
		사무운영	17	8	3	3	1		2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2	1					1	
		열관리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농림운영	3						3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구	
	9급	사육운영	1						1		
		행정 · 환경	2	2							
		행정 · 사무운영									
		공업 · 시설관리									
		공업 · 운전	6						6		
		사무운영 · 시설관리	5	1	1	2			1		
		기계운영 ·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 열관리운영									
		기계운영 · 농림운영									
		기계운영 · 운전	2			1			1		
		통신운영 · 전기운영									
		선박항해운영 · 선박기 관운영									
	전문경력관	소계	15	6	1	4				4	
		가군									
		문화재연구관									
		나군	8	3		4			1		
		기자재관리원									
		농기계교육교관	4			4					
		비상대비원	1	1							
		향토사편찬원	1	1							
		직업훈련교사	1						1		
		VTR촬영편집원	1	1							
		다군	7	3	1				3		
		의전관리원	1	1							
		비상대비원									
		VTR영상편집원	1		1						
		열관리운영원	1	1							
사육운영원	2						2				
기록발간물관리원	1	1									
건설기계정비원	1							1			
연구직		계	231	6		182	1		42		
	연구관	소계	48			43			5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구	
	연구관	녹지연구	2						2		
		수의연구	1						1		
		농업연구	21			20			1		
		보건연구	8			8					
		해양수산연구	1						1		
		환경연구	10			10					
		보건연구 · 환경연구	5			5					
	연구사	소계	183	6		139	1			37	
		녹지연구	13	1						12	
		농업연구	61			56				5	
		보건연구	37			37					
		수의연구	7							7	
		학예연구	6	3						3	
		해양수산연구	9				1			8	
		환경연구	42			40				2	
		기록연구	2	2							
		보건연구 · 환경연구	6			6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농촌지도	8			8					
	지도사	농촌지도	25			25					
소방직		계	4,463	267		4,192			4		
	4급	소방정	27	7		20					
	5급	소방령	108	30		78					
	6급	소방경	309	38		268			3		
	6급	소방위	468	51		416			1		
	7급	소방장	825	85		740					
	8급	소방교	1,517	45		1,472					
	9급	소방사	1,209	11		1,198					
교원직		계	47			47					
	총장	총장	1			1					
	교수	교수	32			32					
	조교	조교	14			14					

강원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조희

제 정 안	검 토 의 건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55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조기안착 및 성공출범을 위하여 ‘특별자치국’ 신설, 경제분야 기능 효율화를 위하여 현재 4개 국을 ‘경제국’과 ‘산업국’ 2개국으로 통폐합, 시군 협력강화 등 자치행정 기능 확대를 위한 ‘행정국’ 신설 등 민선 8기 도정의 비전과 공약실천 및 도민중심·기능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실·국·본부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재난안전실 기능 조정(안 제6조의2)
- 나. 행정국 신설(안 제6조의3)
- 다. 특별자치국 신설(안 제6조의4)
- 라. 경제국 기능 조정(안 제7조) 및 산업국 기능조정(안 제7조의2)
- 마. 보건 및 복지 분야 기능 분리(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2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책기획관
- 전 화: 033-249-2265
- F A X: 033-249-4013
- e-mail: bkhgulee@korea.kr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3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진흥국·첨단산업국·일자리국·글로벌투자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녹색국·건설교통국”을 “경제국·산업국·문화관광국·산림환경국·건설교통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재난안전실·경제진흥국·첨단산업국·일자리국·글로벌투자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보건복지여성국·농정국·녹색국·건설교통국·평화지역발전본부”를 “기획조정실·재난안전실·행정국·특별자치국·경제국·산업국·문화관광국·복지국·보건체육국·농정국·산림환경국·건설교통국”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제7호,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접경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21. 청사건립 기획·총괄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제3호, 제13호, 제7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을 “자연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재해 경감사업 및 재난수습”을 “사회재난 대응전략 수립·추진”으로 한다.

4. 반부패협회의 구성·운영 및 안전감찰활동에 관한 사항

10. 중대재해 예방 정책 수립·조정 및 홍보·교육 등 안전의식 제고

11. 중대산업재해 분야 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조치

12. 중대시민재해 분야 점검 및 이용자 안전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각종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3. 인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개발

4.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징계·포상

5. 성과상여금 및 보수·수당 제도 운영

6.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채용 관리

7. 국내·국외 장기교육훈련 계획 수립

8. 공무원노조 관련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9. 각종 공인신조·개각의 승인 및 관리

10. 문서수발·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방행정 시책, 시군 지도협의 및 조정

1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위치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13.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5. 조직관리 및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16. 주요 사회단체(국민운동단체) 관리 및 협조 지원
17.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관리
18. 출향도민 도정참여 활성화 지원
19.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 및 지원
20.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전략 수립
21. 강원도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22.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및 지원
23. 혁신행정 기획·총괄에 관한 사항
24. 회계, 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5. 내부 정보화 업무 기획·조정 총괄 및 통신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의4(특별자치국) 특별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특별법」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 행·재정 특례 발굴·개선
3. 국가 사무이양·특별도-시군 기능 배분
4. 규제혁파 및 산업특례 발굴·개선에 관한 사항
5.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각종 협의체 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경제진흥국)”을 “(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진흥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대외통상 및 교류·수출지원 종합 기획·조정
9. 국제교류 협력사업 총괄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10. 시장개척 추진 및 전시 박람회 개최·참가지원
11. 강원도 국외본부 및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의 제목 “(첨단산업국)”을 “(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단산업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략과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대내외 투자·기업유치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9.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외자유치관련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의3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 및 노인복지”를 “노인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보건체육국) 보건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위생 총괄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3. 의·약무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예방·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녹색국)”을 “(산림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국장”을 “산림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충열로 83”을 “신복읍 장본길 40”으로 한다.

제20조 중 “특화작목시험장을”을 “특화작목연구소를”로,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위치·분장사무”를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위치·분장사무”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대기질, 강우, 악취, 연료 중의 유황함유량”을 “대기환경측정망, 대기오염경보제, 미세먼지, 악취”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을 “실내공기질, 주택 라돈”으로, “시험·검사·조사·연구”를 “시험·검사·조사·연구”로 한다.

제5장제11절의 제목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동해안 산불”을 “강원도 산불”로,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이하 “동해안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주민진을 해안로 1976”을 “연곡면 진고개로 2530-27”로 한다.

제73조의3 중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한다.

제73조의4제1호 중 “동해안권 산불신고”를 “산불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동해안권 산불지휘”를 “산불지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동해안권 공중”을 “공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동해안권 진화”를 “진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동해안권 유관기관협의회”를 “유관기관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동해안권 산불진화자원”을 “산불진화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동해안권 산불대응”을 “산불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동해안권 산불재난정보”를 “산불재난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동해안권 산불”을 “산불”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동해안권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동해안권 산불대응”을 “산불대응”으로 한다.

제5장제11절에 제7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5(분소)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분소를 둘 수 있으며 분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3조와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강원도 행정기구, 소속기관, 합의회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 ----- ----- ----- -----.
제4조(부지사) ①·② (생략)	제4조(부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경제부지사는 경제진흥국·첨단산업국·일자리국·글로벌투자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녹색국·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③ ----- 경제국·산업국·문화관광국·산림환경국·건설교통국 ----- -----.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재난안전실·경제진흥국·첨단산업국·일자리국·글로벌투자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보건복지여성국·농정국·녹색국·건설교통국·평화지역발전본부를 둔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 기획조정실·재난안전실·행정국·특별자치국·경제국·산업국·문화관광국·복지국·보건체육국·농정국·산림환경국·건설교통국을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조직관리 및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삭제>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7. 회계, 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8. ~ 11. (생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삭제>
13. 미래전략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삭제>
14. ~ 18. (생략)	14. ~ 18. (현행과 같음)
<신설>	19. 접경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1. 청사건립 기획·총괄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의2(재난안전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설>	4. 반부패협의회 구성·운영 및 안전감찰활동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감찰활동에 관한 사항	<삭제>

현행	개정안
4. (생략)	13.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6. <u>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대응전략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u>	6. <u>자연재난</u> -----
7. (생략)	5.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략)	2. (현행 제8호와 같음)
9. <u>재해 경감사업 및 재난수습에 관한 사항</u>	9. <u>사회재난 대응전략 수립·추진</u> -----
<신설>	10. <u>중대재해 예방 정책 수립·조정 및 홍보·교육 등 안전의식 제고</u>
<신설>	11. <u>중대산업재해 분야 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조치</u>
<신설>	12. <u>중대시민재해 분야 점검 및 이용자 안전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u>
10. (생략)	8.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 12. (생략)	14. · 15.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신설>	제6조의3(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각종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3. 인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개발 4.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징계·포상 5. 성과상여금 및 보수·수당 제도 운영 6.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채용 관리 7. 국내·국외 장기교육훈련 계획 수립 8. 공무원노조 관련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9. 각종 공인신조·개각의 승인 및 관리 10. 문서수발·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방행정 시책, 시군 지도협의 및 조정 1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위치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13.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5. 조직관리 및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16. 주요 사회단체(국민운동단체) 관리 및 협조 지원 17.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관리 18. 출향도민 도정참여 활성화 지원 19.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 및 지원 20.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전략 수립 21. 강원도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22.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및 지원 23. 혁신행정 기획·총괄에 관한 사항 24. 회계, 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5. 내부 정보화 업무 기획·조정 총괄 및 통신운영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신 설> 제7조(경제진흥국) 경제진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7. ~ 9. (생략) 10. ~ 15. (생략) 제7조의2(첨단산업국) 첨단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신 설> 4. ~ 6.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7. ~ 20. (생략) 21. 스마트팜 특화산업단지 조성 총괄	제6조의4(특별자치국) 특별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 행·재정 특례 발굴·개선 3. 국가 사무이양·특별도-시군 기능 배분 4. 규제혁파 및 산업특례 발굴·개선에 관한 사항 5.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각종 협의체 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국) 경제국장 -----. 1. ~ 6. (현행과 같음) 7.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대외통상 및 교류·수출지원 종합 기획·조정 9. 국제교류 협력사업 총괄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10. 시장개척 추진 및 전시 박람회 개최·참가지원 11. 강원도 국외본부 및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8. ~ 20.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2. ~ 17. (현행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제7조의2(산업국) 산업국장 -----. 1. ~ 3. (현행과 같음) 4. 전략과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8. 대내외 투자·기업유치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9.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외자유치관련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사항 11. ~ 24. (현행 제7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음) <삭 제>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일자리국) 일자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일자리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 일자리정책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3. 도 일자리사업 종합분석 및 평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청년 창업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어르신 일자리정책 및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7. 여성·장애인 일자리정책 및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8. 실·국·본부별 일자리 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9. 실·국·본부별 일자리 사업 이관 협의·조정 10. 실·국·본부별 일자리 사업 총괄 취합 및 분석 등 11. 그 밖에 일자리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제8조(글로벌투자통상국) 글로벌투자통상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내외 통상·투자·기업유치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및 통상지원 총괄 관리 2.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외자유치관련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내 공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공산품·농수산물 수출 지원 6. 산업입지 공급 및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미래도시 개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시장 개척사업 추진 9. 해외 경제무역사무소 운영 10. 국제화 시책개발·연구 및 국제 자매결연 업무추진 11. 삭제	<삭 제>
제9조(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8. ~ 12. (생략)	제9조(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7. ~ 11. (현행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제10조(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장애인 및 노인복지, 고령화, 장사에 관한 사항 <신 설> 4. ~ 6. (생략)	제10조(복지국) 복지국장 -----. 1. · 2. (현행과 같음) 3. <u>노인복지</u> ----- 4. <u>장애인복지 및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u> 5. ~ 8.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현행	개정안
7. 보건·위생,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대응·관리, 의·약무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2조(녹색국) 녹색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제13조의2(평화지역발전본부)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화지역 발전정책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평화지역 관련 단체 및 협의회 운영·지원 총괄 3.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총괄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 및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추진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평화지역 발전정책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9.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0.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관한 사항 11. 통일기반 조성 SOC사업에 관한 사항 12.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사업에 관한 사항 13. 평화지역 문화행사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평화지역 시민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15. 평화지역 숙식운영 종합실행계획 수립·추진 16. 평화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 17. 평화지역 경관운영 종합실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8. 평화지역 폐기물 처리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9. 평화지역 노후 불량시설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 20. 디엠제트개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6조(설치) ① (생략) ② 농업기술원은 강원도 춘천시 <u>충열로 83</u>에 둔다. 제20조(특화작목연구소) 농업기술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u>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으며,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위치·분장사무</u>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소관사무) ①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5. (생략) 6.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기질, 강우, 악취, 연료 중의 유황함유량, 소음, 진동,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오염도 검사 등의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 9. (생략)	<삭 제> 제10조의2(보건체육국) 보건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위생 총괄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3. 의·약무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예방·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산림환경국) 산림환경국장 -----.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6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신복읍 장본길 40</u> -----. 제20조(특화작목연구소) ----- ----- <u>특화작목연구소를</u> ----- <u>특화작목연구</u> <u>소의 명칭·위치·분장사무</u> -----. 제26조(소관사무)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 <u>대기환경측정망, 대기오염경보</u> <u>제, 미세먼지, 악취</u> ----- <u>실내공기질, 주택 라돈</u> ----- ----- <u>시험·검사·조사·연구</u> ----- 7. ~ 9.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생략) <u>제11절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u> 제73조의2(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동해안 산불의 예방과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 도에 <u>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이하 “동해안산불방지센터”라 한다)</u>를 설치한다. ②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97 6에 둔다. 제73조의3(소장)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3조의4(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동해안권 산불신고 접수·전파 및 상황관제 2. 동해안권 산불지휘 총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도지사) 보좌 3. 동해안권 공중 및 지상 산불진화자원 통합관리 4. 동해안권 진화 헬기 위임 지휘(산림청, 임차, 소방) 및 유관기관 헬기 진화지휘 협조체계 유지 5. 동해안권 유관기관협의회 운영 등 공조 대비태세 유지 6. 동해안권 산불진화자원 관리 7. 동해안권 산불대응 진화자원 교육훈련 8. 동해안권 산불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동해안 권역 산불방지 정책 수립 9. 동해안권 산불 위기징후 분석·평가, 경보발령, 산불피해 저감대책 수행 10. 동해안권 입산통제구역 등 취약지역 관리(현장점검 등), 산불예방 홍보 11. 동해안권 산불대응 평가 등 재발방지 활동 <신설>	② (현행과 같음) <u>제11절 강원도산불방지센터</u> 제73조의2(설치) ① ----- 강원도 산불 ----- ----- 강원도산불방지센터 -----. ② 강원도산불방지센터 ----- 연곡면 진고개로 2530-27 ----. 제73조의3(소장) 강원도산불방지센터 ----- -----. 제73조의4(소관사무) -----. 1. <u>산불신고</u> ----- 2. <u>산불지휘</u> ----- 3. <u>공중</u> ----- 4. <u>진화</u> ----- 5. <u>유관기관협의회</u> ----- 6. <u>산불진화자원</u> ----- 7. <u>산불대응</u> ----- 8. <u>산불재난정보</u> ----- 9. <u>산불</u> ----- 10. <u>입산통제구역</u> ----- 11. <u>산불대응</u> ----- 제73조의5(분소)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분소를 둘 수 있으며 분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희

제 정 안	검 토 의 건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57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민선8기 도정의 비전과 공약실천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도민중심·기능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실·국·본부 개편에 따른 과 단위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하고, 이에 따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청사건립추진단 신설(안 제8조)
- 나. 재난안전실내 재난유형중심 업무 기능 조정(안 제9조)
- 다. 행정국내 과 신설 및 기능조정(안 제9조의2)
- 라. 특별자치국내 과 단위 신설(안 제9조의3)
- 마. 경제국 및 산업국내 과 단위 기능 조정(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 바. 복지국내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기능분리(안 제13조)
- 사. 보건체육국 신설에 따른 과 단위 기능 조정(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2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책기획관
- 전 화: 033-249-2265
- F A X: 033-249-4013
- e-mail: bkhgulee@korea.kr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대변인·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을 “대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예산과·미래전략과·균형발전과·세정과·회계과·교육법무과를”을 “정책기획관·예산과·균형발전과·세정과·교육법무과·접경지역과·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과장”을 “예산과장, 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미래전략과장·균형발전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교육법무과장”을 “균형발전과장·세정과장·교육법무과장·접경지역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3호,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3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전략과장”을 “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사건립(신청사, 2청사) 기획업무 총괄
2. 청사신축 관련 조례 및 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사신축 건립기금(신청사, 2청사)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4. 현 청사 활용방안(교환, 매각, 유치 등)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계획 심의 업무 추진
6. 청사신축 국비 발굴·확보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및 공론화(공청회, 설문조사 등)에 관한 사항
8. 의회, 언론보도 및 각종 민원, 소송 대응에 관한 사항
9.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2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제11항(중전의 제5항)제11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과장”을 “접경지역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접경지역 발전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 숙식·경관 분야 정책 조정 및 실행 총괄
3.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 총괄
4. 접경지역 관련 단체 및 협의회 운영·지원 총괄
5.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6.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제도 관리
7.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8. 국방개혁 관련 도 종합계획 수립
9.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종합 추진계획 수립
10. 접경지역 군부대 유희부지 활용 관련 업무 추진
11. 강원-경기 평화지역 군관협력 추진
12. 군관협력전문관 운영
13. 접경지역 발전정책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14. 접경지역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15. 접경지역특별법 및 관련 조례 제·개정
16.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
17. DMZ 평화포럼 운영 등 관련 업무 총괄
18. 디엠제트 개발 및 평화협력에 관한 사항
19.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총괄(기획·조정·관리·지원)
20. 남북 간 경제·문화·체육 등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21. 남북 간 인도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재난예방과·재난대응과·재난복구과·비상기획과”를 “안전정책과·자연재난과·사회재난과·중대재해대응과·비상기획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예방과장·재난대응과장·재난복구과장”을 “안전정책과장, 비상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연재난과장·사회재난과장·중대재해대응과장”으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비상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9항, 제8항, 제7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예방과장”을 “사회재난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난안전”을 “사회재난”으로, “총괄 기획·조정”을 “총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6호(중전의 제12호) 중 “및”을 “추진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회재난(코로나, 대형산불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총괄 운영
3. 안전한국훈련 계획수립 및 현장훈련
4. 사회재난 이재민 구호, 수습, 기부금, 물품 지원
5. 사회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6. 지하안전 관리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관리
7.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감
8. 내수면 도선 면허관리 및 유·도선 안전관리
9.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관리 및 행정지도
10.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점검관리
11.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관련 업무 총괄
12. 전력 및 가스안전 사고 예방협력
13.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매뉴얼, 대응훈련, 실태점검)
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15. 안전취약계층 화재안전 시설개선 사업 추진
17. 그 밖의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

⑩ 중대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조정 기획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매뉴얼 마련
3.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이행 확인
4.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확인 점검
5.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안전을 위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6. 도 사업장,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확인점검

7.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에 관한 이행 확인 조치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 배치 확인 및 평가관리
9. 중대시민재해 이용자 안전을 위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0.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11.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개선 조치
12. 중대재해 산업 및 시민재해 분야 관련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반기별 자체 점검 시행 및 확인 보고
13. 도내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홍보, 안전수칙 이행 인식 확산,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제9조제8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대응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자연재난 관련 업무 기획 및 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연재해구호계획 수립 작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연재난대비 자원관리, 긴급구호물품, 이재민 지원에 관한사항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5.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
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
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
8. 자연재해 위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9. 자연재난(호우, 태풍, 대설, 폭염, 한파, 가뭄, 지진)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위원회 운영
12. 자연재난 복구 추진에 관한 사항
13.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제9조제8항(중전의 제4항)제15호(중전의 제13호) 중 “재난대응”을 “자연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복구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1호) 중 “운용·관리”를 “운용(총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안전 주요정책 수립 및 총괄 기획·조정
2.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3. 재난관리 평가업무 총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R&D에 관한 사항
4. 강원안전대상 운영, 지역안전지수 개선
5.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7.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8. 국민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및 평가 등 도민안전교육 총괄
9.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조치, 안전관리자문단 관리업무 추진
10.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및 후속대책 수립, 정부합동 안전점검 추진
11. 안전감찰활동 계획수립 및 추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업무추진

12. 재난 예·경보시설 시설 및 재난안전통신망, 재난영상정보인프라 구축 운영 추진

13. 재난안전 종합상황 정보수집 및 보고·전파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의2(행정국에 두는 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정보화정책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자치행정과장·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의전·행사에 관한 사항
2.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3. 각종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4. 민간인 포상 및 명예도민 선정에 관한 사항
5. 인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개발
6.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공무원의 인사운영
7.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징계·포상
8. 시군 공무원의 인사업무 지도·협의 및 인사통계 업무
9. 성과상여금 및 보수·수당 제도 운영
10.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채용 관리
11. 국내·국외 장기교육훈련 계획 수립
12. 공무원·공무직 직무 전문교육 관리
13. 공무원노조 관련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14. 각종 공인 신조·개각의 승인 및 관리
15. 문서수발·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행정 시책, 시군 지도협의 및 조정
2. 도와 시·군 자치단체간 행정협의·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위치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4.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자치단체간 사무의 재배분
7. 주요 사회단체(국민운동단체) 관리 및 협조 지원
8.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관리
9. 도·시군의 기구·직제 및 정원관리
10. 사무분장 조정,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
11. 사무위임·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12. 출향도민 도정참여 활성화 지원
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
14. 미수복지구 실향민 지원 및 관련단체 지원
15.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 및 지원
16. 사무혁신 및 정부3.0 업무에 관한 사항

17.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인감 업무 지도

18.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전략 수립

19. 강원도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20. 강원도 인권센터 운영 및 지도관리

21.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및 지원

⑤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비 지출 및 결산 전반에 관한 사항

2. 회계직 공무원의 직인관리 및 재정보증

3.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4. 물품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 등 총괄관리

5.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관리 및 전반에 관한 사항

6. 지방공유건물 공제회 관련 업무

7. 국·공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조정

8. 공유부동산 시가조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9. 국·공유재산의 처분·대부·사용허가·용도폐지·등기에 관한 사항

10. 시·군유재산 관리업무의 지도 감독

11. 청사시설 관리 및 사업소 건축물 신축·증축 등 기술 지원

12. 관용차량, 관중기, 관공선 정수승인 및 운영관리 지원

⑥ 정보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업무 기획·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2. 정보화(ICT) 신규 사업 및 정책 개발 추진

3.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 사업 추진

4. 행정정보 업무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5.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화 정보시스템

6. 공공분야 빅데이터 기획·조정, 관련 시책 추진

7.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8. 정보보안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

9. 사이버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10. 개인정보보호 종합 기획·조정

11. 행정통신 현대화 기획·조정

12.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

13. 정보통신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

14. 정보통신공사업 및 자가 전기통신설비 민원사무 처리

제9조의3(특별자치국에 두는 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별자치국에 자치법령과·자치분권과·규제혁신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자치법령과장·자치분권과장·규제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치법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특별법」 개정·운영 총괄(법안 마련, 부처·국회·도의회 대응)

2. 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3. 총리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지원 및 정부협약체결 · 평가 추진

4. 특별자치 관련 개별법령 개정 추진

5. 행정체제 특수성 논리 개발

6. 전문가 자문단, 범도민 추진협의체 운영

7. 홍보 및 붐 조성, 도민 교육, 출범 전 행정조치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별자치도 총괄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자치분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법 관련 조례 제 · 개정, 시군 조례 제 · 개정 컨설팅

2.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

3. 행 · 재정 특례 발굴 · 개선

4.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도 · 시군 협의체 운영

5. 교육특구 관련사항,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⑤ 규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구제권 특례 지원 및 핵심규제 정부 과제 반영

2. 기업규제 · 민생불편 등 규제실태 조사

3. 도-시군 규제발굴 협의체 운영

4.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 혁파 등 규제개혁 종합추진

5. 관행 및 법령부재 등 그림자 규제 개선

6.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7.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경제진흥국에 두는 과)”를 “(경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제진흥국에 경제진흥과 · 기업지원과 · 사회적경제과 · 자원개발과”를 “경제국에 경제정책과 · 일자리과 · 국제통상과 · 기업지원과 · 사회적경제과 · 폐광지역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 · 사회적경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진흥과장 · 자원개발과장”을 “일자리과장 · 국제통상과장 · 기업지원과장 · 사회적경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정책과장 · 폐광지역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제8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 일자리 사업 종합분석 및 평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업무 총괄 및 추진실적 관리

4.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 기업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8. 취업 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

10.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11.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총괄

12.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3. 일자리 영향평가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14.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 추진
15. 강원도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16. 청년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7.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실행
18.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청년실업 해소 시책 수립 및 추진
20. 특성화고 및 대학생 일자리 협력사업

⑤ 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통상 및 교류·수출지원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 협력사업 총괄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3. 해외도민 지원사업 추진 총괄
4. 무역인력 양성 및 수출입 통계 분석
5. 강원도 국외본부 운영·관리
6. 친 강원인 육성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관리
7. 시장개척 추진 및 전시 박람회 개최·참가 지원
8. 수출관련 상담 및 실무교육 지원
9. 수출유통망 구축·지원
10. 농수축산식품 및 화장품, 의약품, 기타 제조업 제품 등 수출 육성 지원
11.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연수생 선발 및 연수과정, 교재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13. 유엔-해비타트(UN-HABITAT) 기술지원프로그램 과정 운영
14. 아시아-태평양지역 능력배양 네트워크관리 및 환경기술 과정 운영
15. 그 밖에 통상 및 교류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0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개발과장”을 “폐광지역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 2, 제12호의3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중전의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그 밖에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의 제목 “(첨단산업국에 두는 과)”를 “(산업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첨단산업국에 전략산업과·바이오헬스과·에너지과·정보산업과·데이터산업과를”을 “산업국에 전략산업과·투자유치과·바이오헬스과·에너지과·디지털산업과·반도체산업추진단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에너지과장·정보산업과장·데이터산업과장”을 “투자유치과장·에너지과장·디지털산업과장·반도체산업추진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략과제 총괄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제3항제10호(중전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그 밖에 신산업·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이오헬스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2호가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자유치(관광, 기업 등)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지역투자박람회 및 투자유치설명회 운영
3. 첨단신산업(R&D센터, IT, NT, ET) 및 에너지산업 유치
4. 수도권 이전 및 타시도 이전기업·국내 복귀기업 유치
5. 유치(이전)기업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6. 기업 투자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외자유치 정책개발 및 투자기반 조성
8. 국가별 외투 개별상품 개발 및 해외IR 실시
9.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0. 산업입지 공급 및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11. 공장입지 유도지역 및 금지구역 지정 관리
12. 국가(평화)·지방산업단지 조성, 관리 및 입지 지정
13. 농공단지 조성관리 및 입주업체 지원
14. 스포츠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 산업단지 재생에 관한 사항
15. 혁신도시·기업도시 구역내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내투자유치(관광사업 제외)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산업과장”을 “바이오헬스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정보통신공사업”을 “특허권”으로, “지도감독”을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2. 지역특화 바이오헬스 선도산업 육성 및 전략 기획·조정 총괄
3. 강원 바이오·디지털헬스·의료기기 관련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데이터기반 AI·ICT 융합산업 육성
5. 디지털헬스케어·정밀의료 관련 특구사업 추진
6. 스크립스코리아향채연구원 운영·지원
7. 도내 바이오헬스 혁신기관 협력사업 추진
8.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9. 지식재산 진흥사업 추진
11.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지원
12.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 사업
13.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RLRC, LINC, RIS 등)
14. 강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운영
15.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제5항(중전의 제6항)제1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데이터산업과장”을 “디지털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특화전략 수립”을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8호) 중 “클라우드”를 “디지털 및

데이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8호로 한다.

1. 디지털·데이터 산업기반 및 산업생태계 육성
2.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 연관기업 유치
9. ICT·SW융합 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
10.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산업생태계 육성
11. 메타버스 클러스터 육성·운영

제10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반도체산업추진단

1.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관련 규제 개선, 지원방안 강구
2. 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 연관기업, 연구소 유치 등
4. 그 밖에 반도체산업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를“(문화관광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문화관광체육국에 관광마케팅과·관광개발과·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체육과·올림픽발전과·올림픽시설과”를“문화관광국에 관광정책과·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올림픽지원과·올림픽시설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관광마케팅과장·관광개발과장·문화유산과장·체육과장”을“관광정책과장·문화유산과장”으로, “문화예술과장·올림픽발전과장”을“문화예술과장·올림픽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관광마케팅과장”을 각각“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7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광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광역권 관광협의회 운영
3. 강원관광 현황 및 관광통계 관리
4. 관광사업체 지원 및 지도·관리
5.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관광교류에 관한 사항
6. 관광개발 종합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광역 관광개발사업
8. 문화관광·생태녹색 자원 개발사업
9. 관광특구 관리·운영 및 광역관광특구 추진
10. 길 관련사업, 관광지내 삭도·궤도 업무
11. 국내외 관광 마케팅 관련 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
12. 국내외 관광시장 대상 홍보마케팅사업 추진
14. 관광상품(콘텐츠) 및 특화사업 개발·운영
15. 문화관광축제 및 우수지역축제 육성지원
16. 관광두레 업무
17. 관광수용태세 개선

18. 동계 관광상품 및 한류 관광상품 육성·운영
19. 동아시아관광포럼(EATOF) 및 국제 관광교류 운영
20. 해외 강원관광사무소 총괄 관리
21. MICE 산업육성 및 기반조성
22. 관광단지 및 관광지 인·허가
23. 관광단지 및 관광지 개발사업 관리
24. 관광시설분야 재난대응 및 복구 계획 수립 총괄
25. 관광시설 투자유치 및 인허가 지원
26.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 및 관광기반 여건 개선
27.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발굴·추진
28. 해안권 발전선도사업 추진
29. 항공산업 및 공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관광정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제12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19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12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올림픽발전과장”을 “올림픽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기타 동계올림픽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제목 “(보건복지여성국에 두는 과)”를 “(복지국에 두는 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여성청소년가족과를 둔다.

제13조제2항 중 “경로장애인과장·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보건위생정책과장·공공의료과장·감염병관리과장”을 “노인복지과장·장애인복지과장·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로장애인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여가시설 관리”를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관리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노인학대 예방 및 독거노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8. 어르신 일자리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
9. 어르신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실행
10. 그 밖에 노인 및 장가시설 관련에 관한 사항

제13조제5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2. 장애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등 지원
3.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탈시설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권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일자리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
8. 장애인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실행
9. 그 밖에 장애인 관련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제13조제6항제10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위생정책과장”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자살예방”을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3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여성정책 총괄 기획·조정 및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2.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3. 여성가족연구원·(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도·감독
4. 여성발전기금 운용·관리
5. 여성의 지위향상 정책연구 개발
6. 강원여성의 열 선양사업·홍보
7. 여성지도자 연수 및 교육
8.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9. 성·가정폭력상담소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0. 성매매 예방 및 선도·보호
11.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보호 지원
12. 요보호여성 생활안정 지원
13. 여성일자리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14.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지원 및 관리
15. 거주외국인 실태조사, 지역사회정착 지원 관리, 적응 프로그램 운영
16.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약물 및 업소 지도·단속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희망기금 관리 운영
18.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추진
19. 학교폭력근절 등 교육 분위기 조성
20. 세계잼버리수련장 운영 지도·감독

제13조의2(보건체육국에 두는 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① 보건체육국에 보건위생정책과·체육과·공공의료과·감염병관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보건위생정책과장·체육과장·공공의료과장·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위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공공 유(U)-헬스 및 보건의료시스템 관리
3.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지도

4. 공중보건의사·장학의사 배치 및 운영 지도
5. 특수질환(희귀·난치성 질환)에 관한 사항
6.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7. 건강생활실천사업(금연, 영양, 절주, 운동, 스트레스)에 관한 사항
8. 국민건강·영양진흥 및 가족보건 교육홍보
9.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1. 특수질환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 부설의원 운영 관리
13.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국민건강 영양조사
14. 주민 건강검진
15.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16.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치매 예방·관리
17. 천식·아토피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18.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9. 식·의약품 안전 종합대책 기획·조정
20.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
21.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2.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3.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24. 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25. 유통식품 수거 검사
26. 공중 및 식품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27. 식중독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8.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허가, 품목허가 등 인허가에 관한 사항
29. 위생분야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30.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과대광고에 대한 지도단속
31. 무허가업소 및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도단속
- ④ 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체육진흥협회 및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3. 체육회 업무협조·지원 및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육성
 4. 국민건강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5. 체육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6. 골프장, 스키장 등 등록체육시설의 사업추진 및 시행승인, 착·준공 신고 수리, 체육시설업 등록, 회원모집 계획 수리, 사후관리 등 추진
 7. 신고체육시설 운영 관리
 8. 체육공원 조성, 체육시설의 건립 및 유지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9. 국민레저시설 확충 및 활동지원

10. 레저스포츠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대회 유치
11.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⑤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추진
 2.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중보건의료 위기대응 기획·조정
 4.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운영 지원
 5. 취약지 의료안전망(중환자실) 운영 지원
 6. 공립요양(재활)병원 설립·운영 지원
 7. 지방의료원 경영개선계획 수립·시행
 8.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방의료원 임원 추천·승인·임명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의료원장 성과계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 지방의료원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의료원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4.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 전용 헬기 설치 및 운영 지원
 15. 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6.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응급장비에 관한 사항
 17. 민간 응급환자이송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재난응급의료체계 및 연휴비상진료대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9. 재가 진폐환자 의료지원
 20. 암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21. 장기기증에 관한 사항
 22. 폭염·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24. 출산장려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의·약사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지도 감독
 26.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사항
 27.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
- ⑥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위기발생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4. 생활방역 매뉴얼 작성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재해비축 등 방역약품 및 방역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전문(전담)병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감염병 홍보·교육과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8. 감염병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 발생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감염병 역학조사 계획 및 확산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수공통감염병 및 호흡기 관련 감염병 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14. 수인성감염병 및 식품매개감염증 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15. 사회재난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및 위기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16.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7. 질병보건통합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8. 역학조사 결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19. 감염병 관련 민간 전문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0. 비상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1. 결핵·한센병·성병관리 및 한센협회 지도 감독
22. 지방풍토병 관리 및 위생해충·기생충 구제와 예방대책

제14조제1항 중 “농정과·축산과·유통원예과·친환경농업과·동물방역과”를 “농정과·축산과·농산물유통과·친환경농업과·동물방역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과장·유통원예과장·친환경농업과장·동물방역과장”을 “축산과장·농산물유통과장·친환경농업과장·동물방역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통원예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녹색국에 두는 과)”를“(산림환경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림소득과·산림관리과·환경과·수질보전과”를 “산림소득과·산림관리과·환경정책과·자연생태과·수질보전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소득과장·환경과장”을 “산림소득과장·환경정책과장”으로, “산림관리과장·수질보전과장”을 “자연생태과장·산림관리과장·수질보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제20호 및 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36호까지 및 제38호부터 제4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정책 총괄기획·조정
2. 환경정책 평가·분석 및 연구 발전
3. 환경분야 국제협력 및 민간단체 관리
4.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5. 환경오염물질 저감대책 및 관리
6. 환경기술인 교육 및 대기오염 저감
7. 공공폐기물처분시설 인허가 관리
8. 폐기물처리업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9. 지정·건설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리
10. 자원순환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11. 생활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사업 추진
12. 영농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13.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
14. 사회재난(초미세먼지, 황사) 대응 및 매뉴얼 제·개정 업무
1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운영계획수립·추진
16.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추진, 위원회 구성·운영
18. 건강영향조사, 환경성질환 예방대책 추진 및 사후관리
19.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종합대책 추진

⑥ 자연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시행 및 생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3. 생물다양성 및 생물유전자원 보전·관리
4.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생태관광 운영
5. 야생동물 질병 확산방지 및 관리
6. 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추진
7. 지질공원 인증·관리 및 사업추진 등
8. 생물권보전지역(설악산, DMZ 등) 인증·관리 및 사업추진
9. 대규모사업 사전환경영향평가 검토·지원
10. 환경·전략 영향평가 협의 및 검토
11.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반환사업
12. 설악산 사도 설치 및 친환경적 운영계획 수립·추진
13. 설악산 사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환경 관리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작물연구과·원예연구과·환경농업연구과”를 “연구협력과·작물연구과·원예연구과·농업환경연구과”로, “라 한다)·강원도농업기술원인삼약초연구소(이하 “인삼약초연구소”라 한다)”를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물연구과장”을 “연구협력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연구직”을 “농업 연구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4호) 중 “농업정보화”를 “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험연구 사업의 기획·조정·성과관리·예산 총괄
6. 농가 경영분석 소득증대 및 유통에 관한 연구
7. 정보화농업인 소득창출 지원 및 운영
8. 스마트팜 안정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9.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10. 스마트팜 예측시스템 개발 및 모델실증
11. 스마트농업전문가 교육 및 육성
12. 스마트팜 통합시스템·문헌정보실·기관 홈페이지 운영 관리

제22조제3항제4호(중전의 제11호) 중 “대외”를 “대내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중전의 제12호) 중 “부내”를 “국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예연구과장”을 “작물연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원예작물”을 “식량·특용작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

호 중 “신소득 자원”을 “기후변화 대응 신작목”으로, “특산화”를 “재배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량·특용작물 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
3. 식량·특용작물 고품질 재배기술 연구
4. 식량·특용작물 연구성과 현장 실용화 사업
6. 영농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산업화 연구
7. 식량·특용작물 산업화 현장지원 및 컨설팅
8. 신품종 시범단지 확대 및 지원
9. 벼 작황조사 및 보고
10. 식물 유전자원 은행 D/B 구축 및 운영 관리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농업연구과장”을 “원예연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
2. 소득 유망 원예작물의 우량종묘·종자 생산
3. 원예작물 재배법 개선 연구
4. 원예작물 증식 및 생산성 증대 연구
5. 신소득 원예자원 발굴 및 산업화 연구
6. 유망 수출작목 발굴 및 품질향상 연구
7. FTA 대응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8.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지역적응성 연구
9. 원예작물 산업화 현장지원 및 컨설팅
10. 원예작물 현장애로기술 지원

제22조제5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식품연구소장”을 “농업환경연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농업 연구
2. 농업환경 관리기술 개발 및 농업기상 연구
3. 유기자원 활용 및 시비량 설정 연구
4. 지속농업을 위한 농경지 및 농업용수 모니터링
5. 토양·비료·친환경자재 등 민원분석 사무
6. 주요 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체계 확립
7. 재배작물 주요 병해충 조사, 방제 및 농약등록 연구
8. 천적·익충 이용 곤충 산업화 연구
9. 자원식물·미생물 은행 및 DB 구축
10. 농특산물·미생물 활성화 및 기능성 소재개발 연구
11. 생물자원 이용 농자재 및 생물농약 개발 연구
12. 그 밖에 작물이상 증상 진단 및 처방 민원사무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수수연구소장”을 “농식품연구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도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연구
2. 식품 중간 소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3. 가공식품 안전성 강화 기술 개발
4. 농식품 제품 표준화 공정기술 개발
5. 농식품 산업화 현장지원 및 컨설팅
6. 식품관련 창업지원 기술 컨설팅
7. 농산물 식품성분 분석 및 지원
8. 유용 균주를 이용한 발효 가공 상품 개발
9.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10. 청사·시설·장비·물품·재산의 유지관리
11.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등

제22조제7항제10호 중 “사항”을 “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자연구소장”을 “옥수수연구소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수수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신품종 육성
2. 옥수수 기본식물·원원종·보급종 종자 생산
3. 옥수수 종자생산 기술개발
4. 옥수수 고품질 재배법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연구
5. 기능성 옥수수 산업화 확산 및 지원
6. 옥수수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실용화 기술개발
7. 옥수수 농업기술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9. 청사·시설·장비·물품·재산의 유지관리

제22조제8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8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채연구소장”을 “감자연구소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산채의 우량계통”을 “감자 유전자원 수집·보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감자 고품질 재배법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연구
3. 감자 현장애로 및 실용화 기술개발
4. 종자 생산기술 개발 및 생산·보급
5. 감자 산업화 확산 및 지원 기술 개발
6. 감자 바이러스 검정기술 개발
7.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및 농업환경 연구
8. 고랭지채소 현장애로기술 지원
9. 고원야생화 식물원 유지 및 관리
11. 청사·시설·장비·물품·재산의 유지관리

제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삼약초연구소장”을 “산채연구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삼 안정생산 및”을 “산채 경영비 절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채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신품종 육성
3. 산채 대량증식 생산기술 및 수확후 관리 연구
4. 산채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실용화 연구
5. 산채 우량종자·종묘 생산보급
6. 파프리카·토마토 현장애로기술 지원
7. 파프리카·토마토 품종특성 검정 및 적품종 선발
8. 고온기 극복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실증 연구
9. 파프리카·토마토 안정생산 및 스마트팜 기술 도입 실증
11. 청사·시설·장비·물품·재산의 유지관리
12.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등

제23조제1항 중 “생활자원과를 두며, 지원기획과장·기술보급과장·생활자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을 “농촌자원과를 두며, 지원기획과장·기술보급과장·농촌자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자원과장”을 “농촌자원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 기술서기관”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장의”를 “강원도농업기술원장의”로,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총무과·감염병연구부·식약품연구부·환경연구부”를 “총무과·감염병연구부·식약품연구부·물환경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연구부장”을 “물환경연구부장·대기환경연구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연구부장”을 “물환경연구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장한다.[본항신설 2021.4.2.]”를 “분장한다”로 한다.

1. 물환경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
2. 물환경분야 연구·검사에 관한 사항
- ⑦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
2. 대기환경분야 연구·검사에 관한 사항
3. 검사결과의 통보 및 행정처분·지도
4. 그 밖에 부내 업무총괄 및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제29조의 제목 “(감염병·식약품·환경연구부에 두는 과)”를 “(감염병·식약품·물환경·대기환경연구부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연구부에 수계조사과”를 “물환경연구부에 수계조사과(科)·먹는물분석과(科)·생태환경과(科)·토양화학과(科)·산업폐수과(科)”를 두고, 대기환경연구부에 청정대기과(科)·대기공학과(科), 환경안전과(科), 생활환경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계조사과장·먹는물분석과장·대기공학과장·대기평가과장·토양화학과장·산업폐수과장·환경안전과장”을 “수계조사과장·먹는물분석과장·토양화학과장·산업폐수과장·청정대기과장·대기공학과장·환경안전과장·생활환경과장”으로 한다.

제29조제10항 및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수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환경연구부 소관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하천·호소의 수질검사 및 수질측정망 운영
3. 자연생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4. 하천, 호소의 저질에 관한 오염도 검사
 5. 광산지역 갯내수 수질 오염도 검사
 6. 양어장 배출수 수질오염도 검사
 7. 수계유역관리 오염원 조사 및 영향평가
 8. 수환경의 양적평가를 위한 하천유량 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9. 수질오염총량 관련 기획 및 연구
 10.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조사
 11. GIS 구축을 위한 수질모니터링
 12. 수질분야 국가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13. 자연휴식년제에 따른 산간계곡수 조사
 14. 오염우심 하천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감시
 15.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의 수환경조사 및 관리 방안
 1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⑫ 생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분야 수질시료에 대한 미생물검사
 2. 폐수처리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검사
 3.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수질검사
 4. 수질과 먹는물 분야 중 미생물에 관한 국가 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5. 수질분야 중 생태독성에 관한 국가측정 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6. 하수 및 분뇨처리장 중 미생물처리에 따른 조사 연구
 7. 미생물처리방법에 의한 수질오염 저감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8. 생태독성실험에 대한 조사연구
 9.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오염원인 규명 및 영향에 관한 평가
 10. 지하수(생활·농업·공업용수) 수질검사
 11. 목욕장 및 수영장 수질검사
 1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13. 조류경보제 운영 및 하천, 호소 수생태계 조사 및 평가
 14. 그 밖에 생태환경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 ⑬ 토양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의 성분 및 유해물질 검사
 2. 토양오염도 검사
 3. 토양오염유발시설 오염도 검사
 4. 토양오염 실태조사
 5.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6. 토양, 폐기물분야 정도관리 수행
 7.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관리인 기술지원
 8. 폐기물과 토양 중 벤조(a)피렌 분석
 9. 폐기물자원재생 및 저감기술에 관한 연구
 10. 폐기물이 토양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연구

11. 그 밖에 토양화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⑭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수질검사
2.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
3.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4.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검사
5. 정화조 수질검사
6. 분뇨처리시설 수질검사
7. 축산폐수처리시설 수질검사
8.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검사정 수질검사
9. 공단배수 측정망 운영
10. 하수 및 분뇨처리장 처리효율개선에 관한 연구
11. 폐수시설의 수질오염 저감기술에 관한 연구
12. 오·폐수 처리시설 환경관리인 기술지원
13. 환경기초시설의 처리효율 및 저감방안 조사·연구
14. 배출시설관련 교육 및 기술지도
15. 그 밖에 산업폐수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⑮ 청정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수립
3. 도시대기 및 도로변대기측정망 운영
4. 대기오염경보제(미세먼지, 오존) 운영
5. 대기 중금속측정망 운영
6.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 운영 및 관리
7. 측정소 운영관리 실태 점검
8. 기상관측표준화 품질관리
9. 강원대기환경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10. 온실가스 측정망 운영
11. 강원도 미세먼지 발생특성 조사·연구
12. 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 등가성평가
13.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지원 국·도비 보조금 관리
1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⑯ 대기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등의 대기배출시설 오염도검사
2. 사업장 등에 대한 소음도 및 진동도 검사
3. 건설사업장 등에 대한 비산분진 검사
4. 대기오염방지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5.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6. 소음도와 진동도에 관한 조사 연구

7.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정에 관한 조사연구
8.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관한 조사연구
9. 대기배출시설 관리인 교육 및 기술지도
10. 미량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 연구
11. 산림 대기질 등에 대한 조사·연구
12. 대기환경 기동반 운영
13. 그 밖에 대기공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⑰ 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석면 분석
2.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검사
3. 학교건축물에 대한 석면 검사
4. 다중이용시설과 문화시설 등 기타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
5.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관리기준 적용에 따른 검사
6.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오염도검사
7. 석면오염 저감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8. 환경분야에서 안전과 관련한 오염도검사 및 조사연구
9.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관리법에 따른 검사
10.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평가업무
11. 그 밖에 환경안전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⑱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수립
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3.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및 관리
4.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5.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6.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 오염도 검사
7. 소규모 취약계층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8. 주택 라돈 정밀 조사
9.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중 중금속 등 조사·연구
10. 악취 민원발생사업장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
11.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및 악취검사 지정 기관 운영
12.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검사
13. 그 밖에 생활환경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제43조제6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해운산업 종합개발 계획 수립 추진
19. 항만물류 종합발전 계획 수립 추진
20. 북방물류 연구지원센터 사업 지원
21. 국제항로 활성화, 홍보, 편의시설 지원사업
22. 강원도 항만 물류계획 수립

23.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24. 그 밖에 해운산업 및 항만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58조의2 앞에 “제5절의2 강원도산불방지센터”를 삽입한다.

제64조의2를 제58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64조의2)의 제목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한다.

제5장제5절의2에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하부조직) ① 강원도산불방지센터에 산불정책실, 예방대책실, 상황대응실, 통합지원실을 두며, 산불정책실장, 예방대책실장, 상황대응실장, 통합지원실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산불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불예방, 대비, 진화 등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강원도 산불정책 기획 총괄 및 조정
3. 산불관련 주요시책 발굴 및 개선(건의)
4. 시기별 연도별 산불방지 특별대책수립
5. 강원도 산불정책분야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6. 산불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7. 지역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변경
8. 도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결산
9.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0.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11. 산불관련 기록물 관리
12. 산불 유공자 포상·훈장에 관한 사항
13. 동시다발 대형산불 지휘통제 방안 개선대책
14. 강원도 산불안전관계관 회의 개최 및 운영
15. 산불발생 언론대응 및 자료배포
16. 도민제안, 산불 소송, 민원 처리
17. 산불 유관기관 협력 업무

③ 예방대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불예방 정책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산불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3. 산불위험 취약지 조사계획 수립·시행
4. 숲사랑지도원 위촉 및 관리
5. 입산통제 및 등산로 지정·폐쇄고시 등 관리
6. 산불지상진화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
7.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관리
8. 산불감시원 근무요령 및 초기진화대응 교육·훈련 추진
9.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근무요령 및 진화대응 교육·훈련 추진
10. 임차헬기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11. 진화헬기 운영·지도관리
12.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교육 추진

13. 공중진화를 위한 담수지 현황 관리
14.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④ 상황대응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불 경보발령 및 이행사항 조치
 2. 산불 상황대응 총괄·기획·조정
 3. 산불발생 상황접수 및 유관기관 전파
 4. 산불 상황판단 초기대응, 지휘·조정·통제
 5. 상황실 상황관리 업무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6. 무선중계기 장비시설 구축 및 보수
 7. 산불 위기징후 감시, 산불위험예보시스템 분석
 8. 산불재난 상황 훈련계획 수립 및 추진
 9. 강원도 산불발생 특성 분석 및 연구
 10. 산불재난 상황 언론보도 및 홍보
 11. 대형산불 위험예보 예측·분석
 12. 강원도 기상특성 분석 및 예보
 13. 산불발생 현황 관리 및 보고
 14. 무선통신망 구축 및 관리운영(허가·검사)에 관한 사항
 15. 비상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통합지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불 현장지휘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산불지상진화 강화 업무에 관한 사항
 3. 산불발생 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4. 산불발생 현장 진화 지휘 총괄
 5. 산불발생 상황관리 및 긴급조치
 6. 산불진화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추진
 7.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
 8. 산불 발생원인 조사·분석계획 수립
 9. 산불 조사 감식팀 안전관리계획 수립
 10. 산불대피시설 관리
 11. 산불 유형별 진화대책 개발에 관한 사항
 12. 산불 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13. 산불 피해금액 및 복구금액 산출에 관한 사항
 14. 산불사상자 보상관리
 15. 공간정보 기술기반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6.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 시군 지도점검
 17. 산불 조사 감식분야 기능강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8. 산불진화 빅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제58조의4(분소의 설치) ① 조례 제73조의5에 따라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강원도산불방지센터영서분소(이하 “영서분소”)를 둔다.

- ② 영서분소는 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 24에 둔다.
- ③ 영서분소에 분소장을 두며, 분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④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분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서권 산불 상황대응 총괄·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영서권 산불발생 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3. 영서권 산불 발생원인 조사·분석계획 수립
 4. 영서권 피해지역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영서권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 시군 지도점검에 관한사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에 두는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위치
(제2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
강원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길 26
강원도농업기술원 감자연구소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216
강원도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길 114-5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보좌기관) ① 도지사 밑에 <u>대변인·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u> 을 둔다.	제4조(보좌기관) ① ----- <u>대변인</u> ----- -----.
② <u>행정부지사 밑에 총무행정관을 둔다.</u>	<삭 제>
제5조의2(중대재해대응추진단) ① <u>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삭 제>
② <u>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u>	
1. <u>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조정 기획</u>	
2. <u>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매뉴얼 마련</u>	
3. <u>사업 또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이행 확인</u>	
4. <u>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확인 점검</u>	
5. <u>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안전을 위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u>	
6. <u>도 사업장,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확인점검</u>	
7. <u>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에 관한 이행 확인 조치</u>	
8. <u>「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 배치 확인 및 평가 관리</u>	
9. <u>중대시민재해 이용자 안전을 위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u>	
10. <u>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u>	
11. <u>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개선 조치</u>	
12. <u>중대재해 산업 및 시민재해 분야 관련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반기별 자체 점검 시행 및 확인 보고</u>	
13. <u>도내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홍보, 안전수칙 이행 인식확산, 안전의식 제고</u>	
제7조(총무행정관) ① <u>총무행정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u>	<삭 제>
② <u>총무행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u>	
1. <u>의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u>	
2. <u>공무원 및 공무원직 등의 복리후생과 공무원 노무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u>	
3. <u>인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개발</u>	
4. <u>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공무원의 인사운영</u>	
5. <u>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징계·포상</u>	
6. <u>시군 공무원의 인사업무 지도·협의 및 인사통계 업무</u>	
7. <u>공무원의 임용시험 관리 및 교육훈련</u>	
8. <u>각종 자격·면허시험 관리</u>	
9. <u>공무원노조 관련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u>	
10. <u>각종 공인신조·개각의 승인 및 관리</u>	
11. <u>문서수발·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u>	
12. <u>지방행정 시책, 시군 지도협의 및 조정</u>	

현행	개정안
13. 도와 시·군 자치단체간 행정협의·조정 14.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위치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15. 시·군 공무원 소집 조정·통제 16. 반상회 운영, 집단민원, 지방행정 동향관리 17. 행복추진단 구성 운영 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 19. 미수복지구 실행민 지원 및 관련단체 지원 20. 선거 및 국민투표 21.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방자치 발전 및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업무 지도 23. 문화도민운동 등 도민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24. 민간단체에 대한 협조·지원 25.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 및 지원 26. 선행도민 대상제 운영 27.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 28. 민원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일반여권, 여행증명서 발급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30.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업무 총괄·조정 31. 도단위 분권·균형발전 네트워크 구축 3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자치단체간 사무의 재배분 33. 강원도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삭 제>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예산과·미래전략과·균형발전과·세정과·회계과·교육법무과를 둔다. 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미래전략과장·균형발전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교육법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강원 녹색성장 포럼(경제, 복지, 환경, 관광문화) 운영 지원 14.·15. (생략) 16. 도·시군의 기구·직제 및 정원관리 17. 사무분장 조정,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 18. 사무위임·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19.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등 규제개혁 종합 추진 20.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21.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 정책기획관·예산과·균형발전과·세정과·교육법무과·접경지역과·청사건립추진단을 -----. ② ----- ----- 예산과장, 청사건립추진단장 ----- 균형발전과장·세정과장·교육법무과장·접경지역과장 -----. ③ -----. 1.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14.·1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22. ~ 27. (생략)	22. ~ 27. (현행과 같음)
28. · 29. 삭제	
30. 사무혁신 및 정부3.0 업무에 관한 사항	<삭제>
31. 삭제	
32. (생략)	32.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청사진립추진단장 -----.
1. 미래전략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청사진립(신청사, 2청사) 기획업무 총괄
2. 미래전략 종합 대응계획 수립	2. 청사진축 관련 조례 및 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의 추진상황·실적 점검	3. 청사진축 건립기금(신청사, 2청사)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4. 주요 현안업무 점검을 위한 간부회의 운영	4. 현 청사 활용방안(교환, 매각, 유치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통합과 안전, 인구, 환경, 교육, 문화, 에너지, 식량, 수자원, 건강, 정보통신과 미디어 등 도정비전과 전략 수립	5.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계획 심의 업무 추진
6. 미래전략 총괄 대응체계 구성·운영	6. 청사진축 국비 발굴·확보에 관한 사항
7. 미래전략위원회 구성·운영	7.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및 공론화(공청회, 설문조사 등)에 관한 사항
8. 기획행정 및 사회문화, 교육 분야 실·국·본부 시책개발 총괄	8. 의회, 언론보도 및 각종 민원, 소송 대응에 관한 사항
9. 농림수산, 경제건설 분야 실·국·본부 시책개발 총괄	9.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미래전략 관련 국가,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업무 협력	10. 2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발전전략 수립	<삭제>
12. 국내·외 기관 미래전략 및 이슈 조사·분석	<삭제>
13. 정부부처 및 정부 출연기관 정책 조사·분석	<삭제>
14.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조사·분석 지원	<삭제>
15. 신성장 동력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공모 지원	<삭제>
16. 도정 현안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기획	<삭제>
17. 민간 연구소, 학계 등 외부 싱크탱크와 연계한 거버넌스 협력 구축	<삭제>
18. 도정 정책 종합 분석 및 평가, 사후관리	<삭제>
19. 그 밖에 미래전략 대응에 관한 사항	<삭제>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⑧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비 지출 및 결산 전반에 관한 사항 2. 회계직 공무원의 직인관리 및 재정보증 3.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4. 물품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 등 총괄관리 5.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관리 및 전반에 관한 사항 6. 지방공유건물 공제회 관련 업무 7. 국·공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조정 8. 공유부동산 시가조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9. 국·공유재산의 처분·대부·사용허가·용도폐지·등기에 관한 사항 10. 시·군유재산 관리업무의 지도 감독 11. 청사시설 관리 및 사업소 건축물 신축·증축 등 기술 지원 12. 관용차량, 관중기, 관공선 정수승인 및 운영관리 지원 [중전 제6조에서 이동 2019.9.20.]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⑨ (생략) 제9조(재난안전실에 두는 과) ① 재난안전실에 재난예방과·재난대응과·재난복구과·비상기획과를 둔다. ②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재난예방과장·재난대응과장·재난복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비상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재난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접경지역과장 -----. 1. 접경지역 발전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 숙식·경관 분야 정책 조정 및 실행 총괄 3.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 총괄 4. 접경지역 관련 단체 및 협의회 운영·지원 총괄 5.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6.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제도 관리 7.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8. 국방개혁 관련 도 종합계획 수립 9.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종합 추진계획 수립 10. 접경지역 군부대 유희부지 활용 관련 업무 추진 11. 강원-경기 평화지역 군관협력 추진 12. 군관협력전문관 운영 13. 접경지역 발전정책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14. 접경지역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15. 접경지역특별법 및 관련 조례 제·개정 16.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 17. DMZ 평화포럼 운영 등 관련 업무 총괄 18. 디엠펙트 개발 및 평화협력에 관한 사항 19.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총괄(기획·조정·관리·지원) 20. 남북 간 경제·문화·체육 등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21. 남북 간 인도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⑨ (현행과 같음) 제9조(재난안전실에 두는 과) ① ----- 안전정책과·자연재난과·사회재난과·중대재해대응과·비상기획과 -----. ② ----- 안전정책과장, 비상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연재난과장·사회재난과장·중대재해대응과장 ----- 지방기술서기관 -----. ⑨ 사회재난과장 -----.

현행	개정안
1. 재난안전 주요정책 수립 및 총괄 기획·조정 2.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3. 재난관리 평가 업무 총괄 4.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R&D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6. 재난 예방 및 안전취약분야 점검 총괄 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관련업무 총괄 8.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조치 9.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10. 안전감찰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11.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및 후속대책 수립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2. 특별사법경찰 단속계획 수립 및 추진 13. 그 밖에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1. 사회재난 ----- 총괄 2. 사회재난(코로나, 대형산불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총괄 운영 3. 안전한국훈련 계획수립 및 현장훈련 4. 사회재난 이재민 구호, 수습, 기부금, 물품 지원 5. 사회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6. 지하안전 관리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관리 7.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감 8. 내수면 도선 면허관리 및 유·도선 안전관리 9.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관리 및 행정지도 10.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점검관리 11.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관련 업무 총괄 12. 전력 및 가스안전 사고 예방협력 13.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메뉴얼, 대응훈련, 실태점검) 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15. 안전취약계층 화재안전 시설개선 사업 추진 16. ----- 추진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 ----- <삭 제> 17. 그 밖의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 ⑩ 중대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조정 기획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매뉴얼 마련 3.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이행 확인 4.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확인 점검 5.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안전을 위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현행	개정안
<신 설> ④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u> 2. <u>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u> 3. <u>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하안전 영향평가</u> 4. <u>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u> 5. <u>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관리</u> 6. <u>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관리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운영</u> 7. 「<u>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u>」에 따른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8. 유·도선 사업면허 및 안전지도 관리 9.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10.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및 시설물 관리 11. 재난영상정보 기반시설 구축 및 통합추진 12. 재난안전 종합상황 정보수집 및 보고·전파 <신 설> <신 설> 13. 그 밖의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⑤ 재난복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신 설>	6. <u>도 사업장,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확인점검</u> 7. <u>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에 관한 이행 확인 조치</u> 8. 「<u>산업안전보건법</u>」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 배치 확인 및 평가관리 9. <u>중대시민재해 이용자 안전을 위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u> 10. <u>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u> 11. <u>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개선 조치</u> 12. <u>중대재해 산업 및 시민재해 분야 관련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반기별 자체 점검 시행 및 확인 보고</u> 13. <u>도내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홍보, 안전수칙 이행 인식 확산,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u> ⑧ 자연재난과장 -----. 1. <u>자연재난 관련 업무 기획 및 조정 --</u> 2. <u>자연재해구호계획 수립 작성·운영에 관한 사항</u> 3. <u>자연재난대비 자원관리, 긴급구호물품, 이재민 지원에 관한 사항</u> 4. <u>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u> 5. <u>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u> 6. <u>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u> 7. <u>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u> 8. <u>자연재해 위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u> 9. <u>자연재난(호우, 태풍, 대설, 폭염, 한파, 가뭄, 지진)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u> 10. <u>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11. <u>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위원회 운영</u> 12. <u>자연재난 복구 추진에 관한 사항</u> 13. <u>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u> 14. <u>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u> 15. ----- 자연재난 ----- ⑦ 안전정책과장 -----. 1. <u>재난안전 주요정책 수립 및 총괄 기획·조정</u> 2. <u>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3. 재난관리 평가업무 총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R&D에 관한 사항
<신 설>	4. 강원안전대상 운영, 지역안전지수 개선
<신 설>	5.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1.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6. ----- 운용(총괄)
<신 설>	7.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신 설>	8. 국민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및 평가 등 도민안전교육 총괄
<신 설>	9.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조치, 안전관리자문단 관리업무 추진
<신 설>	10.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및 후속대책 수립, 정부합동 안전점검 추진
<신 설>	11. 안전감찰활동 계획수립 및 추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업무추진
<신 설>	12. 재난 예·경보시설 시설 및 재난안전통신망, 재난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운영 추진
2. 재해구호계획 수립 및 지역구호센터 운영	<삭 제>
3.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풍수해보험 관리	<삭 제>
4. 재해구호물자 및 보관창고 관리·운영	<삭 제>
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삭 제>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삭 제>
7.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삭 제>
8.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위원회 운영	<삭 제>
9. 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응급 포함) 계획 수립	<삭 제>
10. 재난지원금 및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및 추진상황 관리	<삭 제>
11. 그 밖의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3. 재난안전 종합상황 정보수집 및 보고·전파 등에 관한 사항
⑥ (생 략)	⑪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정보화정책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자치행정과장·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의전·행사에 관한 사항 2.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3. 각종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4. 민간인 포상 및 명예도민 선정에 관한 사항 5. 인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개발 6.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공무원의 인사운영 7.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징계·포상 8. 시군 공무원의 인사업무 지도·협의 및 인사통계 업무 9. 성과상여금 및 보수·수당 제도 운영 10.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채용 관리 11. 국내·국외 장기교육훈련 계획 수립 12. 공무원·공무직 직무 전문교육 관리 13. 공무원노조 관련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14. 각종 공인 신조·개각의 승인 및 관리 15. 문서수발·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행정 시책, 시군 지도협의 및 조정 2. 도와 시·군 자치단체간 행정협의·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위치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4.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자치단체간 사무의 재배분 7. 주요 사회단체(국민운동단체) 관리 및 협조 지원 8.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관리 9. 도·시군의 기구·직제 및 정원관리 10. 사무분장 조정, 사무전결처리 ----- 11. 사무위임·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신 설>	12. 출향도민 도정참여 활성화 지원 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 14. 미수복지구 실태민 지원 및 관련단체 지원 15.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 및 지원 16. 사무혁신 및 정부3.0 업무에 관한 사항 17.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인감 업무 지도 18.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전략 수립 19. 강원도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20. 강원도 인권센터 운영 및 지도관리 21.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및 지원 ⑤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비 지출 및 결산 전반에 관한 사항 2. 회계직 공무원의 직인관리 및 재정보증 3.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4. 물품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 등 총괄관리 5.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관리 및 전반에 관한 사항 6. 지방공유건물 공제회 관련 업무 7. 국·공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조정 8. 공유부동산 시가조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9. 국·공유재산의 처분·대부·사용허가·용도폐지·등기에 관한 사항 10. 시·군유재산 관리업무의 지도 감독 11. 청사시설 관리 및 사업소 건축물 신축·증축 등 기술 지원 12. 관용차량, 관중기, 관공선 정수승인 및 운영관리 지원 ⑥ 정보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업무 기획·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2. 정보화(ICT) 신규 사업 및 정책 개발 추진 3.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 사업 추진 4. 행정정보 업무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현행	개정안
<신 설>	5.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화 정보시스템 6. 공공분야 빅데이터 기획·조정, 관련 시책 추진 7.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8. 정보보안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 9. 사이버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10. 개인정보보호 종합 기획·조정 11. 행정통신 현대화 기획·조정 12.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 13. 정보통신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 14. 정보통신공사업 및 자가 전기통신설비 민원사무 처리
<신 설>	제9조의3(특별자치국에 두는 과) ① 특별자치국에 자치법령과·자치분권과·규제혁신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자치법령과장·자치분권과장·규제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치법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특별법」 개정·운영 총괄(법안 마련, 부처·국회·도의 회 대응) 2. 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3. 총리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지원 및 정부협약체결·평가 추진 4. 특별자치 관련 개별법령 개정 추진 5. 행정체제 특수성 논리 개발 6. 전문가 자문단, 범도민 추진협의체 운영 7. 홍보 및 붐 조성, 도민 교육, 출범 전 행정조치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별자치도 총괄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자치분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법 관련 조례 제·개정, 시군 조례 제·개정 컨설팅 2.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 3. 행·재정 특례 발굴·개선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0조(경제진흥국에 두는 과) ① 경제진흥국에 경제진흥과·기업지원과·사회적경제과·자원개발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업지원과장·사회적경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진흥과장·자원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6. (생략) <u><신 설></u>	4.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도·시군 협의체 운영 5. 교육특구 관련사항,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⑤ 규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구제권 특례 지원 및 핵심규제 정부 과제 반영 2. 기업규제·민생불편 등 규제실태 조사 3. 도-시군 규제발굴 협의체 운영 4.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혁과 등 규제개혁 종합추진 5. 관행 및 법령부재 등 그림자 규제 개선 6.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7.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경제국에 두는 과) ① 경제국에 경제정책과·일자리과·국제통상과·기업지원과·사회적경제과·폐광지역과 -----. ② ----- 일자리과장·국제통상과장·기업지원과장·사회적경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정책과장·폐광지역과장 -----. ③ 경제정책과장 -----. 1. ~ 26. (현행과 같음) ④ 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도 일자리 사업 종합분석 및 평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업무 총괄 및 추진실적 관리 4.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 기업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8. 취업 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 10.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11.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총괄 12.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3. 일자리 영향평가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14.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 추진 15. 강원도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16. 청년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7.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실행 18.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청년실업 해소 시책 수립 및 추진 20. 특성화고 및 대학생 일자리 협력사업

현행	개정안
<신 설> ④ (생략) ⑤ (생략) ⑥ <u>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12. (생략) 12의2. 12의3. (생략) 13. 그 밖에 <u>탄광지역</u> 개발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첨단산업국에 두는 과) ① <u>첨단산업국에 전략산업과·바이오헬스과·에너지과·정보산업과·데이터산업과를 둔다.</u>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전략산업과장·바이오헬스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에너지과장·정보산업과장·데이터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전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신 설> 9. 그 밖에 <u>첨단전략산업</u> 육성에 관한 사항 [중전 제10호에서 이동] ④ <u>바이오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지식재산 진흥사업 추진	⑤ 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통상 및 교류·수출지원 종합 기획·조정 <u>에 관한 사항</u> 2. 국제교류 협력사업 총괄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3. 해외도민 지원사업 추진 총괄 4. 무역인력 양성 및 수출입 통계 분석 5. 강원도 국외본부 운영·관리 6. 친 강원인 육성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관리 7. 시장개척 추진 및 전시 박람회 개최·참가 지원 8. 수출관련 상담 및 실무교육 지원 9. 수출유통망 구축·지원 10. 농수축산식품 및 화장품, 의약품, 기타 제조업 제품 등 수출 육성 지원 11.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연수생 선발 및 연수과정, 교재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13. 유엔-해비타트(UN-HABITAT) 기술지원프로그램 <u>과정 운영</u> 14. 아시아-태평양지역 능력배양 네트워크관리 및 환경기술 <u>과정 운영</u> 15. 그 밖에 통상 및 교류에 관한 사항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⑩ <u>폐광지역과장</u> -----. 1. ~ 12. (현행과 같음) 13. 14. (현행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과 같음) 15. ----- <u>폐광지역</u> ----- 제10조의2(산업국에 두는 과) ① <u>산업국에 전략산업과·투자유치과·바이오헬스과·에너지과·디지털산업과·반도체산업추진단을</u> -----. ② ----- ----- 투자유치과장·에너지과장·디지털산업과장·반도체산업추진단장 -----. ③ -----. 1. ~ 8. (현행과 같음) 9. <u>전략과제 총괄에 관한 사항</u> 10. 그 밖에 <u>신산업·전략산업</u> 육성에 관한 사항 ④ <u>투자유치과장</u> -----. 1. 투자유치(관광, 기업 등)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지역투자박람회 및 투자유치설명회 운영

현행	개정안
3. 특허권 관리 및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지원 5.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 사업 6.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 7. 스크립스코리아향체연구원 운영·지원 8. 홍천 메디컬 허브 연구소 지원 9. 광역경제권 선도사업(기능성신소재, 바이오메디컬 등) 육성 지원 10. 바이오산업·의료기기산업·녹색소재산업 등 지식산업 육성 지원 11. 바이오·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전략 기획·조정 총괄 12.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생 략) ⑥ 정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사업 종합기획·조정 2. 도정업무 종합 정보화 및 시군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 추진 3.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등 각종 행정 정보화 정보시스템 4. 정보자료 구축 및 전산업무 연구개발·보급 5. 정보화마을 조성운영 등 각종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6.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7. 행정통신 현대화 기획·조정 8.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 9. 전산·통신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 10. 정보통신공사업 관리 및 지도감독	3. 첨단산업(R&D센터, IT, NT, ET) 및 에너지산업 유치 4. 수도권 이전 및 타시도 이전기업·국내 복귀기업 유치 5. 유치(이전)기업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6. 기업 투자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외자유치 정책개발 및 투자기반 조성 8. 국가별 외투 개별상품 개발 및 해외IR 실시 9.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0. 산업입지 공급 및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11. 공장입지 유도지역 및 금지구역 지정 관리 12. 국가(평화)·지방산업단지 조성, 관리 및 입지 지정 13. 농공단지 조성관리 및 입주업체 지원 14. 스포츠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 산업단지 재생에 관한 사항 15. 혁신도시·기업도시 구역내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내투자유치(관광사업 제외)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바이오헬스과장 -----. 1.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2. 지역특화 바이오헬스 선도산업 육성 및 전략 기획·조정 총괄 3. 강원 바이오·디지털헬스·의료기기 관련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데이터기반 AI·ICT 융합산업 육성 5. 디지털헬스케어·정밀의료 관련 특구사업 추진 6. 스크립스코리아향체연구원 운영·지원 7. 도내 바이오헬스 혁신기관 협력사업 추진 8.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9. 지식재산 진흥사업 추진 10. 특허권 -----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11. 정보보안 및 사이버통합관제센터 운영 12. 개인정보보호 종합 기획·조정 13. IT기반 서비스창출 및 기획·조정 14. 전자상거래 업무 총괄 및 조정 15. IT(ICT)콘텐츠산업·IT(ICT)융복합산업 등 IT(ICT) 관련업무 및 스마트콘텐츠 업무 16.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사항 심사 및 운영시설 관리·감독 ⑦ 데이터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 데이터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신 설> 2. (생략) 3. 변전소 신설 및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4. (생략) 5. K-Cloud Park 특화전략 수립 6. 클라우드 비즈니스 플랫폼 융합단지 구축 7. 국내·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8. 클라우드 전문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9. 데이터 산업과 연계한 국내·외 IT기업 유치 10. 민관합동 공동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11. 차세대 데이터센터 연구조합 설립 추진 12. 스마트팜 특화산업단지 조성 총괄 13. (생략) <신 설>	11.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지원 12.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 사업 13.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RLRC, LINC, RIS 등) 14. 강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운영 15.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삭 제> ⑦ 디지털산업과장 -----. 1. 디지털·데이터 산업기반 및 산업생태계 육성 2.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3. (현행 제2호와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 6. 국내·외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 연관기업 유치 <삭 제> 7. 디지털 및 데이터 ----- 9. ICT·SW융합 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 10.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산업생태계 육성 11. 메타버스 클러스터 육성·운영 <삭 제> 8. (현행 제13호와 같음) ⑧ 반도체산업추진단 1.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관련 규제 개선, 지원방안 강구 2. 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 연관기업, 연구소 유치 등 4. 그 밖에 반도체산업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0조의3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삭 제>
제12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관광마케팅과·관광개발과·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체육과·올림픽발전과·올림픽시설과를 둔다.	제12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 관광정책과·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올림픽지원과·올림픽시설과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관광마케팅과장·관광개발과장·문화유산과장·체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문화예술과장·올림픽발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올림픽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관광정책과장·문화유산과장 ----- ----- 문화예술과장·올림픽지원과장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마케팅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 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관광정책과장 -----
④ 관광마케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관광정책과장 -----
1. 국 소관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1. 관광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권역별 관광종합계획 및 관광진흥시책 수립	2. 광역권 관광협의회 운영
3.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3. 강원관광 현황 및 관광통계 관리
4. 관광중사업 교육에 관한 사항	4. 관광사업체 지원 및 지도·관리
5. 관광사업체(여행업) 지도·관리	5.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관광교류에 관한 사항
6. 관광객 통계관리	6. 관광개발 종합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관광올림픽 추진에 관한 사항	7. 광역 관광개발사업
8. 강원도관광엑스포장 민간 관리위탁 및 디엠펙트박물관 운영 지도·감독	8. 문화관광·생태녹색 자원 개발사업
9. 국내외 관광홍보·마케팅 종합계획수립 추진	9. 관광특구 관리·운영 및 광역관광특구 추진
10. 관광분야 국제대회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0. 길 관련사업, 관광지내 삭도·케도 업무
11. 국내외 관광박람회·설명회·교역전 등 참가 및 마케팅, 여행사 육성	11. 국내외 관광 마케팅 관련 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
12. 동아시아 관광포럼 및 광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12. 국내외 관광시장 대상 홍보마케팅사업 추진
13. 관광분야 국제 인적교류	<삭 제>
14. 해외관광기구와의 교류 협력	14. 관광상품(콘텐츠) 및 특화사업 개발·운영
15. 관광안내시설 설치·운영	15. 문화관광축제 및 우수지역축제 육성지원
16. 관광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16. 관광두레 업무
17.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캠페인	17. 관광수용태세 개선
18. 관광안내원 교육	18. 동계 관광상품 및 한류 관광상품 육성·운영

현행	개정안
19. 해외 관광사무소 운영·지도 20. 관광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21.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개발 22. 문화관광축제 및 도지정 우수 지역축제의 마케팅 및 관광 상품 개발 육성 23. MICE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정책 개발 및 관련 업무 추진 25. 국제회의 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26.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 국제회의 산업의 국외 홍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개발·관광투자유치의 종합기획·조정 및 사업추진 2.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및 관광휴양시설 등의 유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사후관리, 행정 지원 3. 종합유원시설업 및 그 밖에 유기장업 관련 사무 4. 관광사업체 지도·관리 5. 관광지내 삭도·케도사업 지도 감독 6. 설악·금강권 연계관광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8. 관광특구, 관광(단)지 지정승인 및 관리 9. 평화·문화광장 조성·관리 10. 국토정중앙지대 및 디엠제트(DMZ) 관광자원 개발 11.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복원 등 관광자원 조성·관리 12. 폐광지역 종합관광개발사업 추진 13. 동계올림픽 배후 관광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14. 할랄관광산업 육성 15. 지역전략산업(관광분야) 육성계획 수립 1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⑥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17. 삭제 19.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중전 제18호에서 이동 2019.9.20.]	19. 동아시아관광포럼(EATOF) 및 국제 관광교류 운영 20. 해외 강원관광사무소 총괄 관리 21. MICE 산업육성 및 기반조성 22. 관광단지 및 관광지 인·허가 23. 관광단지 및 관광지 개발사업 관리 24. 관광시설분야 재난대응 및 복구 계획 수립 총괄 25. 관광시설 투자유치 및 인허가 지원 26.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 및 관광기반 여건 개선 27.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발굴·추진 28. 해안권 발전선도사업 추진 29. 항공산업 및 공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관광정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삭 제> ⑥ -----. 1. ~ 16. (현행과 같음) 1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⑦ (생략) ⑧ 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체육진흥협회 및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3. 체육회 업무협조·지원 및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육성 4. 국민건강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5. 체육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6. 골프장, 스키장 등 등록체육시설의 사업추진 및 시행승인, 착·준공 신고 수리, 체육시설업 등록, 회원모집 계획 수리, 사후관리 등 추진 7. 신고체육시설 운영 관리 8. 체육공원 조성, 체육시설의 건립 및 유지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9. 국민레저시설 확충 및 활동지원 10. 레저스포츠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대회 유치 11.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중전 제7항에서 이동 2019.9.20.] ⑨ 올림픽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⑩ 올림픽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략) 18. 기타 동계올림픽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중전 제14호에서 이동 2020.10.23.] 제13조(보건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 보건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경로장애인과·여성청소년가족과·보건위생정책과·공공의료과·감염병관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경로장애인과장·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보건위생정책과장·공공의료과장·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④ (생략) ⑤ 경로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경로효친상상 양양 3.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관한 사항 4. (생략) 5.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여가시설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삭제> ⑨ 올림픽지원과장 -----. 1. ~ 7. (현행과 같음) ⑩ -----. 1. ~ 17. (현행과 같음) 18. 기타 동계올림픽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여성청소년가족과를 둔다. ② ----- 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노인복지과장 -----. 1. (현행과 같음) 2.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관리 및 -----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7. 장례식장에 관한 사무	7. 노인학대 예방 및 독거노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8. 어르신 일자리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
9. 장애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등 지원	9. 어르신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실행
10.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노인 및 장가시설 관련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재활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⑥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장애인복지과장 -----.
1. 여성정책 총괄 기획·조정 및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2.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2. 장애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등 지원
3. 여성가족연구원·(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도·감독	3.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4. 여성발전기금 운용·관리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지위향상 정책연구 개발	5. 탈시설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강원여성의 얼 선양사업·홍보	6. 장애인 인권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여성지도자 연수 및 교육	7. 장애인 일자리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
8.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8. 장애인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실행
9. 성·가정폭력상담소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 관련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10. 성매매 예방 및 선도·보호	<삭 제>
11.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보호 지원	<삭 제>
12. 요보호여성 생활안정 지원	<삭 제>
13.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삭 제>
14.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지원 및 관리	<삭 제>
15. 거주외국인 실태조사, 지역사회정착 지원 관리, 적응 프로그램 운영	<삭 제>
16.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약물 및 업소 지도·단속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삭 제>
17. 청소년 희망기금 관리 운영	<삭 제>
18.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추진	<삭 제>
19. 학교폭력근절 등 교육 분위기 조성	<삭 제>
20. 세계잼버리수련장 운영 지도·감독	<삭 제>
21.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현행	개정안
⑦ 보건위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공공 유(U)-헬스 및 보건의료시스템 관리 3.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지도 4. 공중보건의사·장학의사 배치 및 운영 지도 <신 설> <신 설> <신 설> 8. 특수질환(희귀·난치성 질환)에 관한 사항 9.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12. 건강생활실천사업(금연, 영양, 절주, 운동, 스트레스)에 관한 사항 13. 국민건강·영양진흥 및 가족보건 교육홍보 14.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6. 특수질환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도 부설의원 운영 관리 <신 설> 19.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국민건강 영양조사 20. 주민 건강검진 21.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22.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치매 예방·관리 23. 천식·아토피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24.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5. 식·의약품 안전 종합대책 기획·조정	⑦ 여성청소년가족과장 -----. 1. 여성정책 총괄 기획·조정 및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2.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3. 여성가족연구원·(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도·감독 4. 여성발전기금 운용·관리 5. 여성의 지위향상 정책연구 개발 6. 강원여성의 열 선양사업·홍보 7. 여성지도자 연수 및 교육 8.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9. 성·가정폭력상담소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0. 성매매 예방 및 선도·보호 11.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보호 지원 12. 요보호여성 생활안정 지원 13. 여성일자리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14.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지원 및 관리 15. 거주외국인 실태조사, 지역사회정착 지원 관리, 적응 프로그램 운영 16.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약물 및 업소 지도·단속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희망기금 관리 운영 18.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추진 19. 학교폭력근절 등 교육 분위기 조성 20. 세계잼버리수련장 운영 지도·감독 21.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26. <u>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u>	<삭 제>
27. <u>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u>	<삭 제>
28. <u>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u>	<삭 제>
29. <u>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u>	<삭 제>
30. <u>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u>	<삭 제>
31. <u>유통식품 수거 검사</u>	<삭 제>
32. <u>공중 및 식품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u>	<삭 제>
33. <u>식중독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u>	<삭 제>
34. <u>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허가, 품목허가 등 인허가에 관한 사항</u>	<삭 제>
35. <u>위생분야 개인서비스 요금관리</u>	<삭 제>
36. <u>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과대광고에 대한 지도단속</u>	<삭 제>
37. <u>무허가업소 및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도단속</u>	<삭 제>
⑧ 공공의료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u>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추진</u> 2. <u>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u> 3. <u>공중보건의료 위기대응 기획·조정</u> 4. <u>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운영 지원</u> 5. <u>취약지 의료안전망(중환자실) 운영 지원</u> 6. <u>공립요양(재활)병원 설립·운영 지원</u> 7. <u>지방의료원 경영개선계획 수립·시행</u> 8. <u>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9. <u>지방의료원 임원 추천·승인·임명 등에 관한 사항</u> 10. <u>지방의료원장 성과계약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11. <u>지방의료원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u> 12. <u>지방의료원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u> 13. <u>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14. <u>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 전용 헬기 설치 및 운영 지원</u> 15. <u>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u> 16. <u>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응급장비에 관한 사항</u> 17. <u>민간 응급환자이송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18. <u>재난응급의료체계 및 연휴비상진료대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u> 19. <u>재가 진폐환자 의료지원</u> 20. <u>암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u> 21. <u>장기기증에 관한 사항</u> 22. <u>폭염·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u> 23. <u>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u> 24. <u>출산장려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25. <u>의·약사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지도 감독</u> 26. <u>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사항</u> 27. <u>의약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u>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⑨ <u>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2. <u>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3. <u>감염병 위기발생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u> 4. <u>생활방역 매뉴얼 작성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u> 5. <u>재해비축 등 방역약품 및 방역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u> 6. <u>감염병 전문(전담)병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7. <u>감염병 홍보·교육과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u> 8. <u>감염병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u> 9. <u>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u> 10. <u>감염병 발생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11. <u>감염병 역학조사 계획 및 확산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12. <u>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관리에 관한 사항</u> 13. <u>인수공통감염병 및 호흡기 관련 감염병 대응·관리에 관한 사항</u> 14. <u>수인성감염병 및 식품매개감염증 대응·관리에 관한 사항</u> 15. <u>사회재난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및 위기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u> 16. <u>보건소 및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u> 17. <u>질병보건통합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u> 18. <u>역학조사 결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u> 19. <u>감염병 관련 민간 전문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u> 20. <u>비상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21. <u>결핵·한센병·성병관리 및 한센협회 지도 감독</u> 22. <u>지방풍토병 관리 및 위생해충·기생충 구제와 예방대책</u> <신 설>	<삭 제> 제13조의2(보건체육국에 두는 과) ① 보건체육국에 보건위생정책과·체육과·공공의료과·감염병관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보건위생정책과장·체육과장·공공의료과장·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위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보건행정의 종합기획·조정</u> 2. <u>공공 유(U)-헬스 및 보건의료시스템 관리</u> 3. <u>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지도</u> 4. <u>공중보건의사·장학의사 배치 및 운영 지도</u> 8. <u>특수질환(희귀·난치성 질환)에 관한 사항</u> 9. <u>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u> 12. <u>건강생활실천사업(금연, 영양, 절주, 운동, 스트레스)에 관한 사항</u> 13. <u>국민건강·영양진흥 및 가족보건 교육홍보</u> 14. <u>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15. <u>정신보건에 관한 사항</u> 16. <u>특수질환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17. <u>도 부설의원 운영 관리</u> 19. <u>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국민건강 영양조사</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0. 주민 건강검진 21.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22.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치매 예방·관리 23. 천식·아토피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24.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5. 식·의약품 안전 종합대책 기획·조정 26.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 27.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8.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9.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30.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31. 유통식품 수거 검사 32. 공중 및 식품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33. 식중독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4.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허가, 품목허가 등 인허가에 관한 사항 35. 위생분야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36.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과대광고에 대한 지도단속 37. 무허가업소 및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도단속 ④ 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시책 종합계획 수립 ----- 2. 체육진흥협회 및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3. 체육회 업무협조·지원 및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육성 4. 국민건강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5. 체육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6. 골프장, 스키장 등 등록체육시설의 사업추진 및 시행승인, 착·준공 신고 수리, 체육시설업 등록, 회원모집 계획 수리, 사후관리 등 추진 7. 신고체육시설 운영 관리 8. 체육공원 조성, 체육시설의 건립 및 유지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9. 국민레저시설 확충 및 활동지원 10. 레저스포츠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대회 유치 11.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⑤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추진 2.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중보건의료 위기대응 기획·조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4. <u>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운영 지원</u> 5. <u>취약지 의료안전망(중환자실) 운영 지원</u> 6. <u>공립요양(재활)병원 설립·운영 지원</u> 7. <u>지방의료원 경영개선계획 수립·시행</u> 8. <u>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9. <u>지방의료원 임원 추천·승인·임명 등 -----</u> 10. <u>지방의료원장 성과계약 및 평가--</u> 11. <u>지방의료원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u> 12. <u>지방의료원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 -----</u> 13. <u>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u> 14. <u>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 전용 헬기 설치 및 운영 지원,</u> 15. <u>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u> 16. <u>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응급장비에 관한 사항 ,</u> 17. <u>민간 응급환자이송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18. <u>재난응급의료체계 및 연휴비상진료대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u> 19. <u>재가 진폐환자 의료지원</u> 20. <u>암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u> 21. <u>장기기증에 관한 사항</u> 22. <u>폭염·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u> 23. <u>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u> 24. <u>출산장려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25. <u>의·약사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지도 감독</u> 26. <u>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사항</u> 27. <u>의약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신 설>	⑥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위기발생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4. 생활방역 매뉴얼 작성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재해비축 등 방역약품 및 방역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전문(전담)병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감염병 홍보·교육과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8. 감염병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 발생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감염병 역학조사 계획 및 확산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수공통감염병 및 호흡기 관련 감염병 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14. 수인성감염병 및 식품매개감염증 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15. 사회제단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및 위기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16.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7. 질병보건통합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8. 역학조사 결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19. 감염병 관련 민간 전문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0. 비상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1. 결핵·한센병·성병관리 및 한센협회 지도 감독 22. 지방풍토병 관리 및 위생해충·기생충 구제와 예방대책
제14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 농정국에 농정과·축산과·유통원예과·친환경농업과·동물방역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축산과장·유통원예과장·친환경농업과장·동물방역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④ (생략) ⑤ 유통원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⑥·⑦ (생략)	제14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 ----- 농정과·축산과·농산물유통과·친환경농업과·동물방역과 -----. ② ----- ----- 축산과장·농산물유통과장·친환경농업과장·동물방역과장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농산물유통과장 -----. 1. ~ 19.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15조(녹색국에 두는 과) ① 녹색국에 산림소득과·산림관리과·환경과·수질보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산림소득과장·환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여, 산림관리과장·수질보전과장은 지방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생략) ④ 산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산림환경국에 두는 과) ① ----- 산림소득과·산림관리과·환경정책과·자연생태과·수질보전과 -----. ② ----- 산림소득과장·환경정책과장 ----- ----- 자연생태과장·산림관리과장·수질보전과장 -----. ③ (현행과 같음) ④ -----.

현행	개정안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u>19. 산불방지대책수립 및 산불예방·진화에 관한 사항</u>	<삭제>
<u>20. (생략)</u>	<u>19. (현행 제20호와 같음)</u>
<u>21. 숲 사랑지도원 위촉 등 숲사랑 운동 전개</u>	<삭제>
<u>22.·23. (생략)</u>	<u>20.·21. (현행 제22호 및 제23호와 같음)</u>
⑤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환경정책과장 -----.
<u>1. 환경정책의 총괄기획·조정 및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u>	<u>1. 환경정책 총괄기획·조정</u>
<u>2. 환경정책 평가 및 환경정보체계(EIS) 구축·운영</u>	<u>2. 환경정책 평가·분석 및 연구 발전</u>
<u>3. 녹색성장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u>	<u>3. 환경분야 국제협력 및 민간단체 관리</u>
<u>4.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u>	<u>4.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u>
<u>5. 환경영향평가 협의</u>	<u>5. 환경오염물질 저감대책 및 관리</u>
<u>6.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u>	<u>6. 환경기술인 교육 및 대기오염 저감</u>
<u>7. 대기·수질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지도단속, 행정처분</u>	<u>7.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관리</u>
<u>8.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지도단속</u>	<u>8. 폐기물처리업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u>
<u>9. 유해화학물질 및 사용업소 관리</u>	<u>9. 지정·건설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리</u>
<u>10. 연료사용 규제, 악취, 비산먼지 등 대기보전 사무</u>	<u>10. 자원순환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u>
<u>11. 배출부과금,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u>	<u>11. 생활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사업 추진</u>
<u>12.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u>	<u>12. 영농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u>
<u>13. 환경개선특별회계 총괄 관리</u>	<u>13.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u>
<u>14. 생활폐기물·지정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14. 사회재난(초미세먼지, 황사) 대응 및 매뉴얼 제·개정 업무</u>
<u>15. 생활쓰레기 처리 및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u>	<u>1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운영계획수립·추진</u>
<u>16.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전</u>	<u>16.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추진, 위원회 구성·운영</u>
<u>17. (생략)</u>	<u>17. (현행과 같음)</u>
<u>18. 야생 동·식물 관리 및 자연보호 조직육성</u>	<u>18. 건강영향조사, 환경성질환 예방대책 추진 및 사후관리</u>
<u>19. 자연학습원 운영 지도·감독</u>	<u>19.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종합대책 추진</u>
<u>20. 자연휴식지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u>	<삭제>
<u>21.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에 관한 사항</u>	<삭제>
<u>22. 자연환경 명예지도원 위촉 및 관리</u>	<삭제>

현행	개정안
<u>23.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증식</u>	<삭 제>
<u>2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지원</u>	<삭 제>
<u>25. 국립·도립·군립공원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u>	<삭 제>
<u>26. 그 밖에 자연공원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u>	<삭 제>
<u>27.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삭 제>
<u>28. 폐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u>	<삭 제>
<u>29. 지질공원에 관한 사항</u>	<삭 제>
<u>30. 오색삭도 설치 및 친환경적 운영계획 수립·추진</u>	<삭 제>
<u>31. 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 및 지역사회 발전방안 수립·추진</u>	<삭 제>
<u>32.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수립·추진</u>	<삭 제>
<u>33. 산양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u>	<삭 제>
<u>34. 삭도시설 관리계획 및 안전대책 수립</u>	<삭 제>
<u>35. 사후관리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운영</u>	<삭 제>
<u>36.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계획 수립</u>	<삭 제>
<u>37. 삭 제</u>	
<u>38.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추진</u>	<삭 제>
<u>39.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이행사항 점검</u>	<삭 제>
<u>40. 산지전용 등 산지관련 협의 및 이행조건 추진</u>	<삭 제>
<u>41. 건축·기계시설 설치 인·허가 등 협의</u>	<삭 제>
<u>42. 탐방로 및 대청봉 등 훼손지 복원방안 추진</u>	<삭 제>
<u>43. 탐방가이드제 및 상부탐방로 관리·운영방안 수립</u>	<삭 제>

현행	개정안
44. 오색케이블카 자문단 구성·운영 <신설> ⑥ (생략) 제22조(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및 특화작목연구소) ① 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원예연구과·환경농업연구과와 특화작목연구소로 강원도농업기술원농식품연구소(이하 “농식품연구소”라 한다)·강원도농업기술원옥수수연구소(이하 “옥수수연구소”라 한다)·강원도농업기술원감자연구소(이하 “감자연구소”라 한다)·강원도농업기술원산채연구소(이하 “산채연구소”라 한다)·강원도농업기술원인삼약초연구소(이하 “인삼약초연구소”라 한다)를 두며 각 과장 및 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생략) ③ 작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시험 연구사업의 기획, 조정, 성과관리, 예산 총괄 3. 연구직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 수립 및 시행 4.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화에 관한 조사연구 5. 농가 소득증대 및 유통구조개선 연구 6. 식량·특용작물의 신제품육성 및 종자생산 7. 식량·특용작물의 고품질 재배법 연구 8. 연구개발성과 현장접목 실용화사업 추진 9. 영농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사업화 10. 6차 산업화 모델개발 및 소득화 연구 <신설>	<삭제> ⑥ 자연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시행 및 생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3. 생물다양성 및 생물유전자원 보전·관리 4.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생태관광 운영 5. 야생동물 질병 확산방지 및 관리 6. 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추진 7. 지질공원 인증·관리 및 사업추진 등 8. 생물권보전지역(설악산, DMZ 등) 인증·관리 및 사업추진 9. 대규모사업 사전환경영향평가 검토·지원 10. 환경·전략 영향평가 협의 및 검토 11.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반환사업 12. 설악산 삭도 설치 및 친환경적 운영계획 수립·추진 13. 설악산 삭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환경 관리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2조(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및 특화작목연구소) ① ----- ----- 연구협력과·작물연구과·원예연구과·농업환경연구과 ----- ----- ----- ----- 라 한다)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협력과장 -----. 1. (현행과 같음) 2. 시험연구 사업의 기획·조정·성과관리·예산 총괄 3. 농업 연구직 ----- 5. ----- 정보화 ----- <삭제> 6. 농가 경영분석 소득증대 및 유통에 관한 연구 7. 정보화농업인 소득창출 지원 및 운영 8. 스마트팜 안정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9.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10. 스마트팜 예측시스템 개발 및 모델실증 11. 스마트농업전문가 교육 및 육성

현행	개정안
<u><신 설></u> 11. <u>대외 농업기술 교류 및 산학연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u> 12. <u>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u> ④ <u>원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u> 2. <u>소득 유망 원예작물의 우량종묘·종자 생산</u> 3. <u>원예작물 재배법 개선 연구</u> 4. <u>원예작물 증식 및 생산성 증대 연구</u> 5. <u>신소득 자원 발굴 및 특산화 연구</u> 6. <u>유망 수출작목개발 및 품질향상 연구</u> 7. <u>FTA 대응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u> 8. <u>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적응성 검정 연구</u> 9. <u>6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 특산물 산업화 추진</u> 10. <u>원예작물 현장애로기술 해결에 관한 사항</u> ⑤ <u>환경농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토양의 이화학적 검정 및 비옥도 증진 연구</u> 2. <u>농업환경 보존 및 농업기상 연구</u> 3. <u>토양, 비료, 친환경자재 등 민원분석 사무</u> 4. <u>도내 농업용수 및 농업환경 변화 모니터링</u> 5. <u>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개발 연구</u> 6. <u>농업환경 보존 및 지력증진 기술개발 연구</u> 7. <u>재배작물 시비량 설정 연구</u> 8. <u>병해충 발생예찰과 방제기술 개발</u> 9. <u>생물자원이용 친환경농자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u> 10. <u>천적·익충 이용 곤충 산업화 연구</u> 11. <u>기후변화 대응 돌발 병해충·바이러스 예찰망 구축</u> 12. <u>재배작물 주요 병해충조사 및 농약등록 시험연구</u> 13. <u>버섯 신품종 육성 및 소득화 기술 연구</u> 14. <u>버섯 고품질·생력화 재배기술 개발</u>	12. <u>스마트팜 통합시스템·문헌정보실·기관 홈페이지 운영 관리</u> 4. <u>대내외</u> ----- 13. ----- <u>국내</u> ----- ④ <u>작물연구과장</u> -----. 1. <u>식량·특용작물</u> ----- 2. <u>식량·특용작물 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u> 3. <u>식량·특용작물 고품질 재배기술 연구</u> 4. <u>식량·특용작물 연구성과 현장 실용화 사업</u> 5. <u>기후변화 대응 신작목</u> ----- <u>재배기술</u> -- 6. <u>영농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산업화 연구</u> 7. <u>식량·특용작물 산업화 현장지원 및 컨설팅</u> 8. <u>신품종 시범단지 확대 및 지원</u> 9. <u>벼 작황조사 및 보고</u> 10. <u>식물 유전자원 은행 D/B 구축 및 운영 관리</u> ⑤ <u>원예연구과장</u> -----. 1. <u>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u> 2. <u>소득 유망 원예작물의 우량종묘·종자 생산</u> 3. <u>원예작물 재배법 개선 연구</u> 4. <u>원예작물 증식 및 생산성 증대 연구</u> 5. <u>신소득 원예작물 발굴 및 산업화 연구</u> 6. <u>유망 수출작목 발굴 및 품질향상 연구</u> 7. <u>FTA 대응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u> 8. <u>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지역적응성 연구</u> 9. <u>원예작물 산업화 현장지원 및 컨설팅</u> 10. <u>원예작물 현장애로기술 지원</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15. 그 밖에 작물보호 관련 진단 및 방제법 처방 민원사무 ⑥ <u>농식품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강원도 농식품 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2.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연구 3. 강원도 전통 발효기술 보존 및 발전에 관한 연구 4. 농식품 성분 및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 5. 강원도 식물자원의 고도이용 기술 개발 6. 강원도 농식품 부가가치 증대에 관한 연구 7. 농산물 저장가공업체 현장기술 지원 8.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⑦ <u>옥수수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옥수수 유전자원 수집·증식·관리 2. 옥수수 용도별 신품종 육성 연구 3. 옥수수 기본식물·원원종·보급종 종자 생산 4. 옥수수 보급종(F1) 종자생산 기술개발 5. 옥수수 고품질 재배법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연구 6. 옥수수 기능성을 활용한 산업화 연구 7. 옥수수 현장 실용화기술개발 연구 8. 옥수수 동계 해외 세대축진 및 증식 9. 옥수수 국내외 농업기술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0.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신 설> ⑧ <u>감자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서류의 우량계통 선발 및 신품종육성	<삭 제> ⑥ <u>농업환경연구과장 -----.</u> 1.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농업 연구 2. 농업환경 관리기술 개발 및 농업기상 연구 3. 유기자원 활용 및 시비량 설정 연구 4. 지속농업을 위한 농경지 및 농업용수 모니터링 5. 토양·비료·친환경자재 등 민원분석 사무 6. 주요 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체계 확립 7. 재배작물 주요 병해충 조사·방제 및 농약등록 연구 8. 천적·익충 이용 곤충 산업화 연구 9. 자원식물·미생물 은행 및 DB 구축 10. 농특산물·미생물 활성 및 기능성 소재개발 연구 11. 생물자원 이용 농자재 및 생물농약 개발 연구 12. 그 밖에 작물이상 증상 진단 및 처방 민원사무 ⑦ <u>농식품연구소장 -----.</u> 1. 강원도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연구 2. 식품 중간 소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3. 가공식품 안전성 강화 기술 개발 4. 농식품 제품 표준화 공정기술 개발 5. 농식품 산업화 현장지원 및 컨설팅 6. 식품관련 창업지원 기술 컨설팅 7. 농산물 식품성분 분석 및 지원 8. 유용 균주를 이용한 발효 가공 상품 개발 9.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10. 청사·시설·장비·물품·재산의 유지관리 11.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등 ⑧ <u>옥수수연구소장 -----.</u> 1. 옥수수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신품종 육성

현행	개정안
2. 서류 유전자원 수집 및 유지보존 관리 3. 서류 주년생산 작형 및 재배 안전성 기술개발 4. 기후변화 대응 서류 작황예측 및 병해충 방제 연구 5. 감자 신품종 채종단계별 종자생산 및 농가실증 보급 6. 수출용 서류 품종 육성 및 평가 7. 육성품종 바이러스 검정 및 진단기술 개발 8. 동해안지역 신소득 작목 재배기술 개발 9. 우량종자·종묘 생산보급 및 기술지원 10. (생략) 11. (생략) ⑨ 산채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채의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2. 산채 유전자원 수집 및 유지보존 관리 3. 산채 재배법 개선 기술개발 4. 산채 대량증식 생산기술 연구 5. 산채 신작목 발굴 및 산업화 연구 6. 산채류 산지농법 실용화 연구 7. 고원지대 신소득 작목개발 및 특산화 연구 8. 고원지대 유용 유전자원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9. 우량종자·종묘 생산보급 및 기술지원 10. (생략) <신설> 11. (생략) ⑩ 인삼약초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삼 신품종육성 및 우량종자·종묘 생산 연구 2. 인삼 안정생산 및 재배기술 개발 3. 인삼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 4. 약초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종묘 생산 연구	2. 옥수수 기본식물·원원종·보급종 종자 생산 3. 옥수수 종자생산 기술개발 4. 옥수수 고품질 재배법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연구 5. 기능성 옥수수 산업화 확산 및 지원 6. 옥수수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실용화 기술개발 7. 옥수수 농업기술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삭제> 9. 청사·시설·장비·물품·재산의 유지관리 8. (현행 제10호와 같음) 10. (현행 제11호와 같음) ⑨ 감자연구소장 -----. 1. 감자 유전자원 수집·보존 ----- 2. 감자 고품질 재배법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연구 3. 감자 현장애로 및 실용화 기술개발 4. 종자 생산기술 개발 및 생산·보급 5. 감자 산업화 확산 및 지원 기술 개발 6. 감자 바이러스 검정기술 개발 7.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및 농업환경 연구 8. 고랭지채소 현장애로기술 지원 9. 고원야생화 식물원 유지 및 관리 10. (현행과 같음) 11. 청사·시설·장비·물품·재산의 유지관리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⑩ 산채연구소장 -----. 1. 산채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신품종 육성 2. 산채 경영비 절감 ----- 3. 산채 대량증식 생산기술 및 수확후 관리 연구 4. 산채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실용화 연구

현행	개정안
5. <u>약초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재배법 개선 연구</u> 6. <u>새로운 약초자원 소득화 연구</u> 7. <u>인삼·약초 농가 현장애로기술 개발</u> 8. <u>인삼·약초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 관리</u> <신 설> 9. (생략) <신 설> 10. <u>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u> <신 설> 제23조(기술지원국에 두는 과) ① <u>기술지원국에 지원기획과·기술보급과·생활자원과를 두며, 지원기획과장·기술보급과장·생활자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u> ②·③ (생략) ④ <u>생활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6. (생략) 제24조(미래농업교육원) ① <u>미래농업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② <u>미래농업교육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③ (생략) 제28조(하부조직) ① <u>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감염병연구부·식약품연구부·환경연구부를 두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을 둔다.</u> ② <u>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식약품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부지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u> ③ ~ ⑤ (생략) ⑥ <u>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환경분야 연구·검사계획 수립</u> <신 설> 2. 3. (생략)	5. <u>산채 우량종자·종묘 생산보급</u> 6. <u>파프리카·토마토 현장애로기술 지원</u> 7. <u>파프리카·토마토 품종특성 검정 및 적품종 선발</u> 8. <u>고온기 극복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실증 연구</u> 9. <u>파프리카·토마토 안정생산 및 스마트팜 기술 도입 실증</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1. <u>청사·시설·장비·물품·재산의 유지관리</u> <삭 제> 12. <u>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등</u> 제23조(기술지원국에 두는 과) ① ----- ----- <u>농촌자원과를 두며, 지원기획과장·기술보급과장·농촌자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u>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농촌자원과장</u> -----. 1. ~ 6. (현행과 같음) 제24조(미래농업교육원) ① ----- ----- <u>지방기술서기관</u> -----. ② ----- <u>강원도농업기술원장의</u> ----- ----- <u>공무원</u>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하부조직) ① ----- <u>총무과·감염병연구부·식약품연구부·물환경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u> -----. ② ----- ----- <u>물환경연구부장·대기환경연구부장</u>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u>물환경연구부장</u> -----. 1. <u>물환경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u> 2. <u>물환경분야 연구·검사에 관한 사항</u>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⑦ 동부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신설 2021.4.2.] 1. ~ 5. (생략) 제29조(감염병·식약품·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① 감염병연구부에 질병조사과(科)·신종감염병대응과(科)·감염역학과(科)를 두고, 식약품연구부에 식품분석과(科)·식품미생물과(科)·약품화학과(科)·농산물검사와(科)를 두며, 환경연구부에 수계조사과(科)·먹는물분석과(科)·대기공학과(科)·대기평가과(科)·생태환경과(科)·토양화학과(科)·산업폐수과(科)·환경안전과(科)를 둔다. ② 질병조사과장·신종감염병대응과장·감염역학과장·식품분석과장·약품화학과장·농산물검사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식품미생물과장·생태환경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수계조사과장·먹는물분석과장·대기공학과장·대기평가과장·토양화학과장·산업폐수과장·환경안전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⑨ (생략) ⑩ 수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중정 제9항에서 이동 2021.4.2.] 1. 환경연구부 소관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하천·호소의 수질검사 및 수질측정망 운영 3. 자연생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4. 하천, 호소의 저질에 관한 오염도 검사 5. 광산지역 갭내수 수질 오염도 검사 6. 양어장 배출수 수질오염도 검사 7. 수계유역관리 오염원 조사 및 영향평가 8. 수환경의 양적평가를 위한 하천유량 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9. 수질오염총량 관련 기획 및 연구 10.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조사 11. GIS 구축을 위한 수질모니터링 12. 수질분야 국가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13. 하천, 호소에 대한 조류예보제 및 수생태조사 및 평가 14. 자연휴식년제에 따른 산간계곡수 조사 15. 오염우심 하천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감시 16.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의 수환경조사 및 관리 방안 1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생략)	⑦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 2. 대기환경분야 연구·검사에 관한 사항 3. 검사결과의 통보 및 행정처분·지도 4. 그 밖에 부내 업무총괄 및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⑧ ----- 분장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29조(감염병·식약품·물환경·대기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① ----- ----- 물환경연구부에 수계조사과(科)·먹는물분석과(科)·생태환경과(科)·토양화학과(科)·산업폐수과(科)를 두고, 대기환경연구부에 청정대기과(科)·대기공학과(科), 환경안전과(科), 생활환경과 ----. ② ----- ----- 수계조사과장·먹는물분석과장·토양화학과장·산업폐수과장·청정대기과장·대기공학과장·환경안전과장·생활환경과장 -----.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수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환경연구부 소관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하천·호소의 수질검사 및 수질측정망 운영 3. 자연생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4. 하천, 호소의 저질에 관한 오염도 검사 5. 광산지역 갭내수 수질 오염도 검사 6. 양어장 배출수 수질오염도 검사 7. 수계유역관리 오염원 조사 및 영향평가 8. 수환경의 양적평가를 위한 하천유량 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9. 수질오염총량 관련 기획 및 연구 10.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조사 11. GIS 구축을 위한 수질모니터링 12. 수질분야 국가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13. 자연휴식년제에 따른 산간계곡수 조사 14. 오염우심 하천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감시 15.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의 수환경조사 및 관리 방안 1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⑫ 대기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중전 제11항에서 이동 2021.4.2.] 1. 사업장 등의 대기배출시설 오염도검사 2. 사업장 등에 대한 소음도 및 진동도 검사 3. 악취배출시설 등의 악취검사 4. 건설사업장 등에 대한 비산분진 검사 5. 유통 유류 중 유황분석 6. 대기오염방지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7.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8. 악취제거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9. 소음도와 진동도에 관한 조사 연구 10.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정에 관한 조사연구 11.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관한 조사연구 12. 대기배출시설 관리인 교육 및 기술지도 13. 미량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 연구 14. 산림 대기질 등에 대한 조사·연구 15.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및 악취검사 지정 기관 운영 16. 환경 기동반 운영 17. 그 밖에 대기공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⑫ 생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분야 수질시료에 대한 미생물검사 2. 폐수처리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검사 3.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수질검사 4. 수질과 먹는물 분야 중 미생물에 관한 국가 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5. 수질분야 중 생태독성에 관한 국가측정 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6. 하수 및 분뇨처리장 중 미생물처리에 따른 조사 연구 7. 미생물처리방법에 의한 수질오염 저감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8. 생태독성실험에 대한 조사연구 9.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오염원인 규명 및 영향에 관한 평가 10. 지하수(생활·농업·공업용수) 수질검사 11. 목욕장 및 수영장 수질검사 1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13. 조류경보제 운영 및 하천, 호소 수생태계 조사 및 평가 14. 그 밖에 생태환경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⑬ 대기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중전 제12항에서 이동 2021.4.2.] 1.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2.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오염도 검사 3.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의 관리 및 운영 4. 대기질 중 중금속측정망의 관리 및 운영 5. 강수의 산성도 및 성분에 관한 조사 6.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 경보제 운영 7. 도시 대기오염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8. 대기오염 예측과 관리모델 개발 및 운영 9. 대기오염물질의 수송 등에 관한 조사·연구 10.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저감방안 조사·연구 11. 실내공기질 관리인 교육 및 기술지도 12. 기후변화 관련 조사·연구 13. 온실가스 검정기관 운영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14. 동계올림픽 개최지 대기질 조사 15. 올림픽 개최 경기장 및 숙박시설 공기질 조사 16. 그 밖에 대기평가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⑬ 토양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의 성분 및 유해물질 검사 2. 토양오염도 검사 3. 토양오염유발시설 오염도 검사 4. 토양오염 실태조사 5.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6. 토양, 폐기물분야 정토관리 수행 7.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관리인 기술지원 8. 폐기물과 토양 중 벤조(a)피렌 분석 9. 폐기물자원재생 및 저감기술에 관한 연구 10. 폐기물이 토양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연구 11. 그 밖에 토양화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⑭ 생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중전 제13항에서 이동 2021.4.2.] 1. 환경분야 수질시료에 대한 미생물검사 2. 폐수처리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검사 3.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수질검사 4. 수질과 먹는물 분야 중 미생물에 관한 국가 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5. 수질분야 중 생태독성에 관한 국가측정 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6. 하수 및 분뇨처리장 중 미생물처리에 따른 조사 연구 7. 미생물처리방법에 의한 수질오염 저감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⑭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수질검사 2.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 3.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4.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검사 5. 정화조 수질검사 6. 분뇨처리시설 수질검사 7. 축산폐수처리시설 수질검사 8.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검사정 수질검사 9. 공단배수 측정망 운영 10. 하수 및 분뇨처리장 처리효율개선에 관한 연구

현 행	개 정 안
8. 생태독성실험에 대한 조사연구 9.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오염원인 규명 및 영향에 관한 평가 10. 지하수(생활·농업·공업용수) 수질검사 11. 목욕장 및 수영장 수질검사 1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13. 환경기초시설의 처리효율 및 저감방안 조사·연구 14. 배출시설관련 교육 및 기술지도 13. 그 밖에 생태환경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⑮ 토양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중전 제14항에서 이동 2021.4.2.] 1. 폐기물의 성분 및 유해물질 검사 2. 토양오염도 검사 3. 토양오염유발시설 오염도 검사 4. 토양오염 실태조사 5.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6. 토양, 폐기물분야 정도관리 수행 7.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관리인 기술지원 8. 폐기물과 토양 중 벤조(a)피렌 분석 9. 폐기물자원재생 및 저감기술에 관한 연구 10. 폐기물이 토양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연구 11. 그 밖에 토양화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12. 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 등가성평가 13.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지원 국·도비 보조금 관리 1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⑯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중전 제15항에서 이동 2021.4.2.] 1. 폐수배출시설의 수질검사 2.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 3.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4.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검사 5. 정화조 수질검사 6. 분뇨처리시설 수질검사 7. 축산폐수처리시설 수질검사 8.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검사정 수질검사 9. 공단배수 측정망 운영 10. 하수 및 분뇨처리장 처리효율개선에 관한 연구 11. 폐수시설의 수질오염 저감기술에 관한 연구 12. 오·폐수 처리시설 환경관리인 기술지원 13. 환경기초시설의 처리효율 및 저감방안 조사·연구 14. 배출시설관련 교육 및 기술지도 15. 그 밖에 산업폐수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11. 폐수시설의 수질오염 저감기술에 관한 연구 12. 오·폐수 처리시설 환경관리인 기술지원 13. 환경기초시설의 처리효율 및 저감방안 조사·연구 14. 배출시설관련 교육 및 기술지도 15. 그 밖에 산업폐수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⑮ 청정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수립 3. 도시대기 및 도로변대기측정망 운영 4. 대기오염경보제(미세먼지, 오존) 운영 5. 대기 중금속측정망 운영 6.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 운영 및 관리 7. 측정소 운영관리 실태 점검 8. 기상관측표준화 품질관리 9. 강원대기환경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10. 온실가스 측정망 운영 11. 강원도 미세먼지 발생특성 조사·연구 12. 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 등가성평가 13.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지원 국·도비 보조금 관리 1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⑯ 대기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등의 대기배출시설 오염도검사 2. 사업장 등에 대한 소음도 및 진동도 검사 3. 건설사업장 등에 대한 비산분진 검사 4. 대기오염방지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5.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6. 소음도와 진동도에 관한 조사 연구 7.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정에 관한 조사연구 8.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관한 조사연구 9. 대기배출시설 관리인 교육 및 기술지도 10. 미량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 연구 11. 산림 대기질 등에 대한 조사·연구 12. 대기환경 기동반 운영 13. 그 밖에 대기공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⑰ 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중전 제16항에서 이동 2021.4.2.] 1.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석면 분석 2.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검사 3. 학교건축물에 대한 석면 검사 4. 다중이용시설과 문화시설 등 기타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 5.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관리기준 적용에 따른 검사 6.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오염도검사 7. 석면오염 저감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8. 환경분야에서 안전과 관련한 오염도검사 및 조사연구 9.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관리법에 따른 검사 10.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평가업무 11. 그 밖에 환경안전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⑰ 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석면 분석 2.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검사 3. 학교건축물에 대한 석면 검사 4. 다중이용시설과 문화시설 등 기타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 5.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관리기준 적용에 따른 검사 6.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오염도검사 7. 석면오염 저감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8. 환경분야에서 안전과 관련한 오염도검사 및 조사연구 9.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관리법에 따른 검사 10.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평가업무 11. 그 밖에 환경안전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⑱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수립 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3.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및 관리 4.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5.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6.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 오염도 검사 7. 소규모 취약계층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8. 주택 라돈 정밀 조사 9.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중 중금속 등 조사·연구 10. 악취 민원발생사업장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 11.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및 악취검사 지정 기관 운영 12.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검사 13. 그 밖에 생활환경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제43조(하부조직) ① ~ ⑤ (생략)	제43조(하부조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해양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그 밖에 해운항만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8. 해운산업 종합개발 계획 수립 추진
<신 설>	19. 항만물류 종합발전 계획 수립 추진
<신 설>	20. 북방물류 연구지원센터 사업 지원
<신 설>	21. 국제항로 활성화, 홍보, 편의시설 지원사업
<신 설>	22. 강원도 항만 물류계획 수립
<신 설>	23.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신 설>	24. 그 밖에 해운산업 및 항만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제5절의2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제64조의2(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의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58조의2(소장) 강원도산불방지센터 ----- -----.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58조의3(하부조직) ① 강원도산불방지센터에 산불정책실, 예방대책실, 상황대응실, 통합지원실을 두며, 산불정책실장, 예방대책실장, 상황대응실장, 통합지원실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산불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불예방, 대비, 진화 등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강원도 산불정책 기획 총괄 및 조정 3. 산불관련 주요시책 발굴 및 개선(건의) 4. 시기별 연도별 산불방지 특별대책수립 5. 강원도 산불정책분야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6. 산불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7. 지역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변경 8. 도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결산 9.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0. 강원도 산불방지도대책본부 설치·운영 11. 산불관련 기록물 관리 12. 산불 유공자 포상·훈장에 관한 사항 13. 동시다발 대형산불 지휘통제 방안 개선대책 14. 강원도 산불안전관계관 회의 개최 및 운영 15. 산불발생 언론대응 및 자료배포 16. 도민제안, 산불 소송, 민원 처리 17. 산불 유관기관 협력 업무 ③ 예방대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불예방 정책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산불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3. 산불위험 취약지 조사계획 수립·시행 4. 숲사랑지도원 위촉 및 관리 5. 입산통제 및 등산로 지정·폐쇄고시 등 관리 6. 산불지상진화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 7.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관리 8. 산불감시원 근무요령 및 초기진화대응 교육·훈련 추진 9.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근무요령 및 진화대응 교육·훈련 추진 10. 임차헬기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11. 진화헬기 운영·지도관리 12.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교육 추진 13. 공중진화를 위한 담수지 현황 관리 14.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상황대응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불 경보발령 및 이행사항 조치 2. 산불 상황대응 총괄·기획·조정 3. 산불발생 상황접수 및 유관기관 전파 4. 산불 상황판단 초기대응, 지휘·조정·통제 5. 상황실 상황관리 업무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6. 무선중계기 장비시설 구축 및 보수 7. 산불 위기징후 감시, 산불위험예보시스템 분석

현행	개정안
<u><신 설></u>	8. 산불재난 상황 훈련계획 수립 및 추진 9. 강원도 산불발생 특성 분석 및 연구 10. 산불재난 상황 언론보도 및 홍보 11. 대형산불 위험예보 예측·분석 12. 강원도 기상특성 분석 및 예보 13. 산불발생 현황 관리 및 보고 14. 무선통신망 구축 및 관리운영(허가·검사)에 관한 사항 15. 비상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통합지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불 현장지휘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산불지상진화 강화 업무에 관한 사항 3. 산불발생 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4. 산불발생 현장 진화 지휘 총괄 5. 산불발생 상황관리 및 긴급조치 6. 산불진화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추진 7.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 8. 산불 발생원인 조사·분석계획 수립 9. 산불 조사 감식팀 안전관리계획 수립 10. 산불대피시설 관리 11. 산불 유형별 진화대책 개발에 관한 사항 12. 산불 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13. 산불 피해금액 및 복구금액 산출에 관한 사항 14. 산불사상자 보상관리 15. 공간정보 기술기반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6.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 시군 지도점검 17. 산불 조사 감식분야 기능강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8. 산불진화 빅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u><신 설></u>	제58조의4(분소의 설치) ① 조례 제73조의5에 따라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강원도산불방지센터영서분소(이하 “영서분소”)를 둔다. ② 영서분소는 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 24에 둔다. ③ 영서분소에 분소장을 두며, 분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분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서권 산불 상황대응 총괄·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영서권 산불발생 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3. 영서권 산불 발생원인 조사·분석계획 수립 4. 영서권 피해지역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영서권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 시군 지도점검에 관한사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조희

제 정 안	검 토 의 건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고 시

강원도 고시 제2022-277호

주천강 하천점용허가(예버등교)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2일

강 원 도 지 사

－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주천강(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횡성군수(재난안전과)																
	주 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예버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개 요	<table><tr><td rowspan="2">시설명</td><td rowspan="2">재 원</td><td colspan="2">점용면적(㎡)</td></tr><tr><td>영구</td><td>일시</td></tr><tr><td colspan="2">합 계</td><td>2,796</td><td>1,203</td></tr><tr><td>예버등교</td><td>L=94.8m, B=7.5m</td><td>2,796</td><td>1,203</td></tr></table>			시설명	재 원	점용면적(㎡)		영구	일시	합 계		2,796	1,203	예버등교	L=94.8m, B=7.5m	2,796	1,203
		시설명	재 원	점용면적(㎡)														
				영구	일시													
		합 계		2,796	1,203													
예버등교	L=94.8m, B=7.5m	2,796	1,203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511-2번지 일원 (No.48+418)																
	면 적	영구: 2,796㎡ / 일시: 1,20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영구: 시설물 존치시까지 일시: 실시계획인가일 ~ '23. 12. 까지																

강원도 고시 제2022-278호

덕치천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물골교)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2일

강 원 도 지 사

-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덕치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홍천군수(건설방재과)																	
	주 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33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영귀미면 노천2리 물골 교량 개축공사																	
	개 요	<table><tr><td rowspan="2">시설명</td><td rowspan="2">재 원</td><td colspan="2">점용면적(㎡)</td></tr><tr><td>영구</td><td>일시</td></tr><tr><td colspan="2">합 계</td><td>322</td><td>327</td></tr><tr><td>물골교</td><td>L=30.0m, B=6.0m</td><td>322</td><td>327</td></tr></table>				시설명	재 원	점용면적(㎡)		영구	일시	합 계		322	327	물골교	L=30.0m, B=6.0m	322	327
		시설명	재 원	점용면적(㎡)															
				영구	일시														
		합 계		322	327														
물골교	L=30.0m, B=6.0m	322	327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홍천군 영귀미면 노천리 산10-34번지 외 1필지 (No.21+153.3)																	
	면 적	영구: 322㎡ 일시: 32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영구: 시설물 존치시까지 일시: '23. 12월 까지																	

- 실시계획인가

하천공사의 명칭		영귀미면 노천2리 물골 교량 개축공사				
점 용 자 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홍천군수(건설방재과)				
	주 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33				
공 사 위 치		홍천군 영귀미면 노천리 산10-34번지 외 1필지 (No.21+153.3)				
공사의 목적 및 사유		영귀미면 노천2리 물골 교량 개축공사				
공 사 기 간		실시계획인가일부터 ~ '23. 12월 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점용면적(㎡)		토지소유자
				영구	일시	
홍천군 영귀미면 노천리	산10-34	임	7,951	274	327	국(산림청)
〃	산10-33	임	25,766	48		국(산림청)
합 계			33,717	322	327	

강원도 고시 제2022-284호

2020년 제2차 강원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제2차 강원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강릉시 구산1지구의 경미한 변경이 있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1. 사 업 명: 2020년 강원도 지적재조사사업

2. 변경내역

사업 시행자 (지구명)	위 치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필지수 (필)	면적 (㎡)	필지수	면적 (㎡)	
강릉시 (구산1지구)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143-1번지 일원	588	222,385	581	222,242	7필지 감소/ -143㎡

3. 기 타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나.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사업지구의 지적소관청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고시 제2022-285호

강원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및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3조에 따라 강원도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강원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문화재구역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 삼척 봉황산 미륵삼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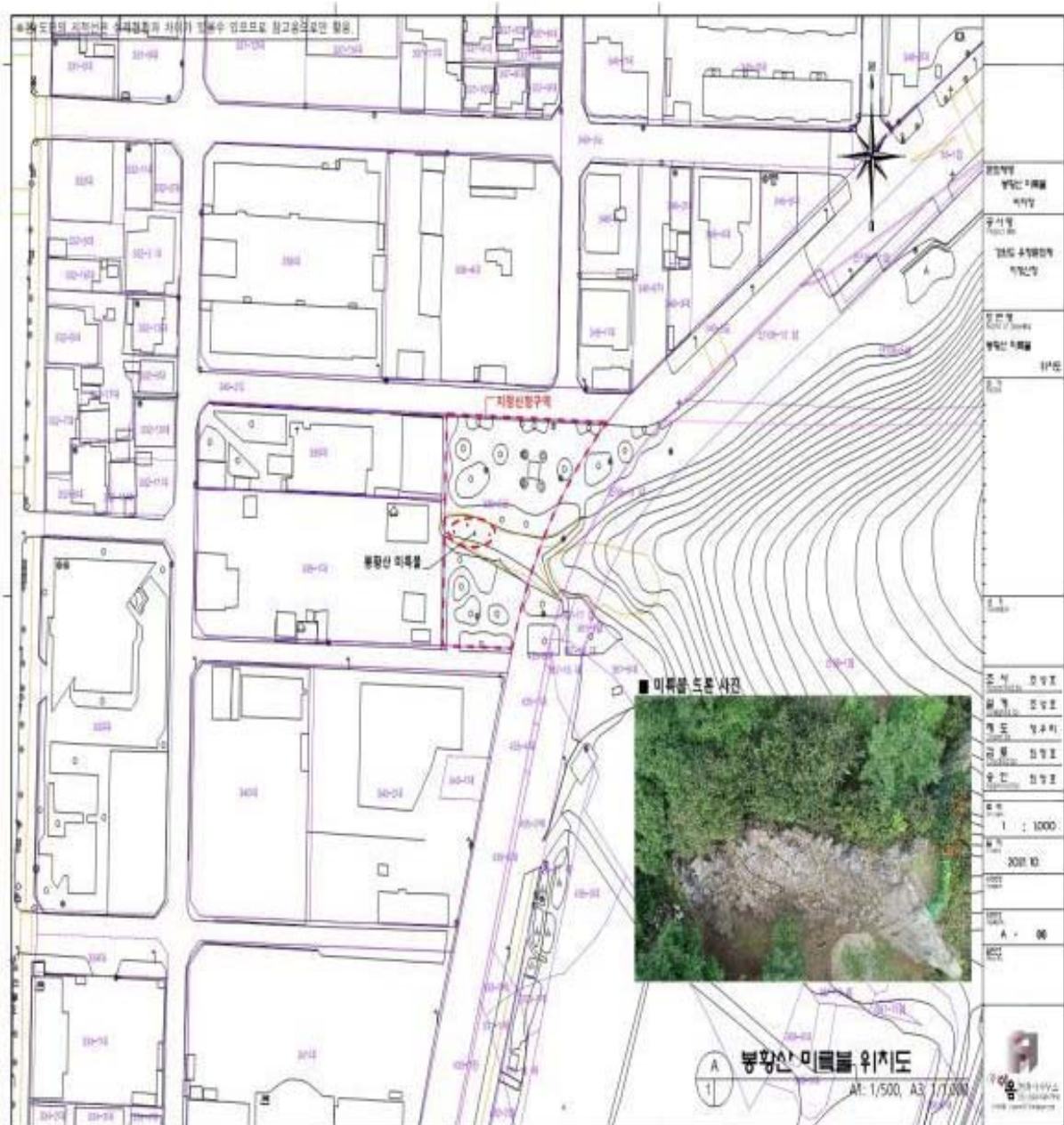
- 지정종별: 강원도 유형문화재
- 지정명칭: 삼척 봉황산 미륵삼불(三陟 鳳凰山 彌勒三佛)
- 수 량: 3구(軀)
- 시 대: 조선시대(1838년)
- 지 정 일: 2022. 8. 19.(도보 고시일)
- 소 재 지: 강원 삼척시 남양동 339-2
- 소유자(관리자): 삼척시장(삼척시 중앙로 295)
- 지정면적: 1필지 2,167.9㎡(문화재구역-2,167.9㎡)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삼척시 남양동	339-2	공원	2,167.9	2,167.9		중앙로296	삼척시

○ 지정사유

- 삼척 봉황산 미륵삼불은 성읍 주변에 1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지역사·미술사·불교사·민속학적으로 차별화되는 의의와 가치가 있다. 봉황산 미륵삼불은 1835년 삼척부사 이규헌이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고을의 안녕과 빈번했던 재해를 대처하기 위한 지방관의 적극적인 통치행위의 사례로써 조선 후기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또한 조성 시기와 이유가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19세기 미술사적(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지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음.

○ 지형도면



2. 삼척향교 석물 일괄(관수대, 하마비, 성생대, 망료석함)

- 지정종별: 문화재자료
- 문화재명: 삼척향교 석물 일괄(관수대, 하마비, 성생대, 망료석함)
三陟鄕校 石物 一括(盥水臺, 下馬碑, 省牲臺, 望療石函)
- 수 량: 4기
- 시 대: 조선 / 성생단 (1855년 이전 추정), 망료석함(1656년)
- 지정면적: 4필지 2,651㎡(문화재구역-2,651㎡)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 고
				지정면적	보호면적	성 명	주 소	
1	교동	557-3	대	592	-	(재)강원도 향교재단	춘천시 삭주로 18	
2	교동	566	종교	1,461	-	(재)강원도 향교재단	춘천시 삭주로 18	
3	교동	566-4	도	162	-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4	교동	567	종교	436	-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소 재 지: 강원도 삼척시 교동 566번지 일원
- 소 유 자: 기획재정부, 재단법인 강원도 향교재단
- 관 리 자: 삼척향교
- 지정일자: 2022. 8. 19.(도보 고시일)
- 지정사유
 - 삼척향교 망료석함은 석함과 지붕돌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고 1662년 허목이 쓴 『척주지』에 1656년(효종 7년, 丙申年) 삼척부사 이지온이 망료석함을 제작한 기록이 명확하고, 성생대는 성생의를 행하기 위한 석물로써 지역성과 희소성이 인정된다. 삼척 향교 내 하마비와 관수대 또한 지역성과 풍토성 등 향토문화의 연구의 가치가 인정 되므로 삼척향교 석물 일괄(관수대, 하마비, 성생대, 망료석함)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함.
- 지형도면



강원도 고시 제2022-28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 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사업연장
변경	지방도	415호선	정선~연곡선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산2번지	증2,602㎡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산2-12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산2	-	0.12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12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번	읍면동	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계		3필지		12,351,686	12,351		
1	왕산면	왕산리	산2-12	임야	1,070	1,070	강원도	
2	왕산면	왕산리	852	임야	2,336	2,336	-	
3	왕산면	왕산리	산2	임야	12,348,280	8,945	국(산림청)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20일
- 열람장소: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033-649-8631), 강릉시 도로과(033-640-5226)
- *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여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않음

※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강원도 고시 제2022-28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415호선	노선명	정선~연곡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범위: 도로구역(강원도고시 제2022-287호)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이내, 구간: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산2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 구조에 대한 훼손방지,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등				
비 고					

※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여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않음

－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강원도 공고 제2022-125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6항 위반 사업장에 대해 영업장 및 대표자 주소에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 송부 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1. 공고기간: 2022. 8. 11. ~ 2022. 8. 25. (15일간)

2. 공고내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위반법규	위반내용	
썬에너지 주식회사 (전*택)	강원도 원주시 정지길31 (학성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6항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요건 미충족	사업정지 6개월 (2022. 7. 23.~ 2023. 1. 18.)

3. 안내사항

가.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해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행정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기 처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청 에너지과 박요셉 주무관(☎033-249-29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공고 제2022-1259호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따른

집다리골자연휴양림 휴장 공고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에서는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따른 집다리골자연휴양림 휴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 공 고 명: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집다리골자연휴양림 휴장
2. 휴장사유: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진·출입 및 수도시설 사용 불가로 휴장
3. 휴장기간: 2022. 9. 1.(목) ~ 12. 31.(토)
*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완료 시기에 따라 휴장기간 변경 가능
4. 대 상 지: 집다리골자연휴양림(춘천시 사북면 화악지암1길 1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관리운영과 집다리골자연휴양림 (033-248-67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공고 제2022-1268호

제74회 강원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0조에 의거, 제74회 강원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1. 심의일시: 2022. 7. 29.(금) 14:00 ~ 18:00

2. 심의장소: 강원도청 제2청사 4층 중회의실

3. 참석위원: 11명(부위원장 1, 위촉직 10)

4. 심의안건 및 결과 ※ 세부내용 개별 통보

순번	건축물명	작품명	구분	작품가격 (천원)	심의결과
1	태백 황지동 1단지 부영아파트	마중 가던 길	조각	71,300	적합
		Dream in dream	조각	71,300	적합
2	태백 황지동 2단지 부영아파트	Love interest	조각	108,100	부적합
3	동해 프라우드 스위트아파트	달콤한 마카롱 타워	조각	100,600	적합
4	남원주 역세권 A1공동주택	Slice image-광야를 달리다	조각	111,000	적합
5	평창 스위트엘크루	Memory	조각	62,800	적합(조건부)

강원도 공고 제2022-1269호

지방도408호선 무이~생곡간 도로확포장공사 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 공람을 실시하고, 동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1. 계획의 개요

- 가. 계 획 명: 지방도408호선 무이~생곡간 도로확포장공사
- 나. 위 치: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 다. 사업 주요내용: 도로설계 L=8.38km
- 라. 사업 시행 기관명: 강원도(도로과)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신문공고: 2022년 08월 22일(경향신문, 강원일보)
※ 강원도, 평창군, 홍천군 홈페이지 공고
- 나. 공람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2년 9월 20일(20일간)
- 다. 공람장소: 강원도청 도로과, 홍천군 건설방재과, 평창군 안전건설과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시·군	일 시	장 소
평창군	2022. 09. 06(화), 11:00	봉평문화복지센터
홍천군	2022. 09. 06(화), 14:00	서석면사무소

4. 주민의견 제출 및 기타사항

- 가. 제출기간: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2022년 9월27일까지)
- 나.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도로과(033-249-2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2. 주민의견 제출서

강원도 공고 제2022-1274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교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1. 등록번호: 강원도 제2022-11호
2. 모 집 자: 상동꿀두바우축제위원회
3. 사무소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태백산로 3246
4. 모집목적: 상동꿀두바우축제 개최 지원
5. 모집지역: 전국
6. 모집기간: 2022. 8. 16. ~ 2022. 9. 25. ※ 사용기한: 2022. 10. 31.
7.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8. 모집목표액: 60,000,000원
9. 모집방법: 지정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및 접수처 운영
10. 모집비용: 2,000,000원
11. 보관방법: 금융기관 예치 및 지정장소 보관

시 군 행정

원주시 고시 제2022-330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반곡동 공동주택)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반곡동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로 결정(변경)[원주시고시 제 2022-316(2022. 8. 1.) 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8월 19일

원 주 시 장

1. 원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66	반곡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반곡동 1507-1번지 일원	-	증) 59,955	59,955	신설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 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변경 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59,555.00	-	59,555.00	1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3,378.00	-	43,378.00	72.35	
	제3종일반주거지역	16,577.00	-	16,577.00	27.65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 없음

1) 고도지구: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7	반곡4지구	고도지구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산 1-20 일원	45m 이하-부지에 접한 소로1-170호선의 평균계획고	162,510	강고제56호 (03. 3. 11.)	
기정	18	반곡5지구	고도지구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05 일원	45m 이하-중로1-24호선의 도로계획고	223,292	강고제56호 (03. 3. 11.)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65	22	보조 간선도로	1,012	대로1-13 반곡동산4임	중로2-86 단구동1303전	일반 도로		강고제51호 (03. 2. 27.)	
변경	중로	1	65	22~25	보조 간선도로	1,012	대로1-13반곡 동산4임	중로2-86 단구동1303전	일반 도로		-	일부구간 3m확폭 (L=110m)
기정	중로	3	136	12~14	보조 간선도로	750	대로2-8	소로1-170	일반 도로		강고제2019호- 25호 (19. 1. 18.)	
변경	중로	3	136	12~14	보조 간선도로	463	대로2-8	중로1-65 반곡동1493-2	일반 도로		-	일부축소 (L=142m)
신설	중로	3	146	12~14	보조 간선도로	145	반곡동 1516-7	소로1-170			-	
기정	중로	2	54	15~18	집산도로	435	소로1-170	중로2-51	일반 도로		강고제51호 (03. 2. 27.)	
변경	중로	2	54	15~18	집산도로	435	소로1-170	중로2-51	일반 도로		-	일부구간 3m확폭 (L=190m)

2) 공간시설: 변경

가) 녹지 결정(변경)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 후		
신설	85	녹지	경관녹지	반곡동 1494-1번지 일원	-	증) 925	925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

도면표시번호			가 구		비율 (%)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59,955.00	100.00
공동주택용지 (A)	소 계		－	55,051.00	91.82
	A-1	공동주택용지	반곡동 1507-1번지 일원	55,051.00	91.82
기반시설용지 (B)	소 계		－	4,225.00	7.05
	B-1	도로(중로1-65)	반곡동 1489-1번지 일원	304.00	0.51
	B-2	도로(중로2-54)	반곡동 1521-2번지 일원	2,996.00	5.00
	B-3	경관녹지	반곡동 1494-1번지 일원	925.00	1.54
구거용지 (C)	소 계		－	679.00	1.13
	C-1	구 거	산1-20번지 일원	679.00	1.13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동주택용지 (A-1)	반곡동 1507-1번지 일원	용도	·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5%
		용적률	· 200%
		높이	· 최고고도지구 높이 적용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형태	
		색채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용지 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5M (부대 복리시설 부분 제외)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

- 1) 공동주택용지 주 출입구 및 부 출입구에 한하여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 2) 진·출입구를 제외한 전 구간 차량 출입 불허 구간 지정
- 3) 가급적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는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여 덩굴장미 식재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게재 생략

원주시 고시 제2022-333호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32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원주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32호)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원 주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공원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2	반곡	근린 공원	원주시 반곡동 산1-28일원	14,004	-	14,004	강고 제51호 (03. 3. 8.)

나.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1)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총괄)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건 축 면 적 (㎡)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4,004	14,004	100.0	100.0					
1 공 원 시 설	시 설 계	4,230	4,340	30.2	31.0					
	기반시설	1,497	1,477	10.7	10.5					
	산책로	998	1,054	7.1	7.5					
	광 장	499	423	3.6	3.0					
	조경시설	2,518	2,574	18.0	18.4					
	휴양시설	0	0	0	0					
	교양시설	160	234	1.1	1.7					
	편익시설	55	55	0.4	0.4	55	55	55	55	화장실 1동
2 녹지 및 기타		9,774	9,664	69.8	69.0					

2)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2	반곡 공원	○ 세부조성계획 변경 • 기반시설 - 진입광장 1 변경: 435㎡ → 366㎡, 감) 69㎡ - 진입광장 2 변경: 64㎡ → 57㎡, 감) 7㎡ - 산책로 변경: 998㎡ → 1,054㎡, 증) 56㎡ • 조경시설 - 계절초화원-1 변경: 420㎡ → 486㎡, 증) 66㎡ - 계절초화원-2 변경: 338㎡ → 373㎡, 증) 35㎡ - 오솔길화원 변경: 290㎡ → 265㎡, 감) 25㎡ - 다목적잔디광장 변경: 1,470㎡ → 1,450㎡, 감) 20㎡ • 교양시설 - 숲속교실 변경: 160㎡ → 234㎡, 증) 74㎡ • 녹지 및 기타 - 녹지 및 기타 변경: 8,843㎡ → 8,733㎡, 감) 110㎡	○ 도시계획도로에 폐지에 따라서 내부 산책로 및 지역광장을 변경하고 지역주민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세부조성계획 변경

3) 세부시설 조서

구분	시설명	관리 번호	부지면적(㎡)			구성비 (%)	건축물(㎡)				건물 동수 (동)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4,004	－	14,004		55	55	55	55	1동	
시설 소계			4,230	증) 110	4,340							
기반 시설	소계		1,497	감) 20	1,477							
	진입광장 1	가-1	435	감) 69	366							
	진입광장 2	가-2	64	감) 7	57							
	산책로		998	증) 56	1,054							
조경 시설	소계		2,518	증) 56	2,574							
	계절초화원 -1	나-1	420	증) 66	486							
	계절초화원 -1	나-2	338	증) 35	373							
	오솔길화원	다	290	감) 25	265							
	다목적광장	라	1,470	감) 20	1,450							
	조각상	①										
	원두막	②										
	바닥분수	③										

구분	시설명	관리 번호	부지면적(㎡)			구성비 (%)	건축물(㎡)				건물 동수 (동)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휴양 시설	소계											
	통나무의자	④										
	등의자	⑤										
교양시설	소계		160	증) 74	234							
	숲속교실	마	160	증) 74	234							
편익시설	소계		55		55		55	55	55	55	1동	
	화장실	바	55		55		55	55	55	55	1동	
녹지 및 기타	소계		9,774	감) 110	9,664							
	도시숲복원		931		931							
	녹지 및 기타		8,843	감) 110	8,733							

4) 도로 결정(변경) 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m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19	527	998	1,054				
산책로	산	1	기존	2	324	306	648	613	산책로	진입광장 1	산책로 1	
		2	기존	2	114	124	228	280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1	
		3	기존	1.5	39	39	59	59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3	
		4	기존	1.5	8	6	12	14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3	
		5	기존	1.5	20	29	30	46	산책로	산책로 3	산책로 1	
		6	기존	1.5	14	23	21	42	산책로	산책로 3	진입광장 1	

다.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32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실음 생략

원주시 고시 제2022-335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2-21호)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원 주 시 장

□ 실시계획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원주시 가현동 68-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2-21호)사업

나. 명칭: 가현우체국~가현동간(가현1길) 도로 확·포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시설결정		금회시행		비고
	폭	연장	폭	연장	
대로2-5호	15m	1,118m	15m	70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원주시장(건설방재과장),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기정: 2009. 4. 10. ~ 2022. 12. 31.

나. 변경: 2009. 4. 10. ~ 202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토지조서(변경없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사항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사항	
1	원주시 가현동	68-28	대	85	85	공	원주시				
2	"	76-4	잡	22	22	공	원주시				
3	"	68-1	도	55	55	공	원주시				
4	"	68-4	답	23	23	최원녕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94				
5	"	68-36	도	978	560	공	원주시				
6	"	67-15	도	127	127	공	원주시				
7	"	48-34	잡	20	20	공	원주시				
8	"	48-33	잡	1	1	공	원주시				
9	"	67-4	도	284	284	공	원주시				
10	"	48-35	잡	9	9	공	원주시				
11	"	66-10	도	226	226	공	원주시				
12	"	66-6	도	51	51	공	원주시				
13	"	74-5	도	256	256	공	원주시				
14	"	64-89	대	158	158	공	원주시				
15	"	64-86	대	36	36	공	원주시				
16	"	48-23	잡	4	4	공	원주시				
17	"	48-28	잡	319	319	공	원주시				
18	"	64-33	도	59	59	공	원주시				
19	"	81-3	도	98	98	공	원주시				
20	"	82-9	잡	150	150	공	원주시				
21	"	82-1	전	38	38	공	원주시				
22	"	82-8	전	28	28	공	원주시				
23	"	123-5	대	41	41	공	원주시				
24	"	123-4	대	32	32	공	원주시				
25	"	48-29	잡	35	19	공	원주시				
26	"	48-19	잡	11	8	공	원주시				
27	"	48-25	잡	63	59	공	원주시				
28	"	48-26	잡	43	5	공	원주시				
29	"	68-32	대	105	12	공	원주시				
30	"	68-27	대	52	52	공	원주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사항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사항	
31	원주시 가현동	68-17	대	23	23	공	원주시				
32	"	68-29	대	13	13	공	원주시				
33	"	68-16	답	26	26	공	원주시				
34	"	68-30	대	79	79	공	원주시				
35	"	68-31	대	116	116	공	원주시				
36	"	68-33	대	180	180	공	원주시				
37	"	64-95	중	279	279	공	원주시				
38	"	67-8	대	103	98	공	원주시				
39	"	65-5	중	40	40	공	원주시				
40	"	67-10	도	17	17	공	원주시				
41	"	67-11	중	4	4	라한성	원주시 가현동 67-7				
42	"	65-4	답	2	2	공	원주시				
43	"	67-14	대	66	66	공	원주시				
44	"	66-9	대	29	29	공	원주시				
45	"	66-7	도	408	408	공	원주시				
46	"	64-97	도	47	47	공	원주시				
47	"	64-29	도	36	36	공	원주시				
48	"	64-96	도	42	42	공	원주시				
49	"	64-30	도	116	116	공	원주시				
50	"	64-32	도	43	43	공	원주시				
51	"	74-1	도	17	17	국	기획재정부				
52	"	74-4	도	261	261	공	원주시				
53	"	64-90	답	27	27	공	원주시				
54	"	64-91	답	19	19	공	원주시				
55	"	64-31	도	274	274	공	원주시				
56	"	64-93	대	38	38	공	원주시				
57	"	64-92	잡	40	40	공	원주시				
58	"	64-87	도	500	500	공	원주시				
59	"	64-94	대	43	43	공	원주시				
60	"	80-5	대	10	10	공	원주시				
61	"	81-7	대	18	18	공	원주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사항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사항	
62	원주시 가현동	81-6	도	451	451	공	원주시				
63	"	81-8	대	31	31	공	원주시				
64	"	81-9	대	24	24	공	원주시				
65	"	124-7	답	182	182	공	원주시				
66	"	124-14	대	20	20	공	원주시				
67	"	124-13	잡	7	7	공	원주시				
68	"	124-11	도	47	47	공	원주시				
69	"	124-6	도	40	40	공	원주시				
70	"	124-3	도	17	17	미등기					
71	"	124-12	답	29	29	미등기					
72	"	125-20	대	10	10	공	원주시				
73	"	125-18	대	95	95	공	원주시				
74	"	125-1	도	50	50	미등기					
75	"	125-17	대	14	14	공	원주시				
76	"	125-16	대	63	63	공	원주시				
77	"	125-15	대	46	46	공	원주시				
78	"	127-11	대	8	7	공	원주시				
79	"	125-2	대	13	13	장호춘	원주시 원동 220				
80	"	127-10	대	93	93	공	원주시				
81	"	127-1	도	56	56	박우순	원주시 원문로 176, 103동 203호 (단계동,현대아파트)				
						박용순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4길 24, 2층				
						박혜순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추읍로 179번길 17-5				
						박혜경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397, 207동 1303호				
						박진호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 211번길 13, 409호(꿈의궁전아파트)				
						박혜자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8길 22-6 비2호				
82	"	127-12	대	27	27	공	원주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사항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사항	
83	원주시 가현동	128-14	대	29	29	공	원주시				
84	"	128-13	잡	38	38	공	원주시				
85	"	128-12	잡	154	154	공	원주시				
86	"	128-1	도	132	132	공	원주시				
87	"	128-11	잡	185	185	공	원주시				
88	"	128-10	잡	70	26	공	원주시				
89	"	131-10	도	8	8	공	원주시				
90	"	131-9	도	97	97	공	원주시				
91	"	131-1	도	60	60	국	기획재정부				
92	"	131-8	대	74	74	공	원주시				
93	"	130-7	도	94	94	공	원주시				
94	"	130-1	도	33	33	국	기획재정부				
95	"	51-2	구	10	10	국	농수산부				
96	"	51-8	대	12	12	공	원주시				
97	"	135-1	천	10	10	미등기					
98	"	142-3	대	519	255	공	원주시				
99	"	142-2	천	1,848	95	국	건설교통부				
100	"	142-1	도	10	10	국	기획재정부				
101	"	101-9	천	155,621	53	국	건설교통부				
102	"	124-4	도	86	86	국	기획재정부				
103	"	124-5	도	202	202	미등기					
104	"	48-16	도	1,260	944	국	건설교통부				
105	"	132-2	도	278	269	공	원주시				
106	"	135-2	도	215	215	국	기획재정부				
107	"	5	잡	145,004	92	국	국방부				
108	"	51-7	구	18	18	국	농수산부				
109	"	5-4	잡	2,572	138	국	국방부				
110	"	5-2	도	1,968	307	공	원주시				
111	"	141-2	도	417	417	국	기획재정부				
112	"	140-3	도	1,031	108	국	건설교통부				
113	"	5-26	잡	45	6	공	원주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사항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사항	
114	원주시 가현동	64-88	중	69	69	공	원주시				
115	"	67-10	도	17	17	공	원주시				
116	"	51-9	대	49	49	공	원주시				
117	"	51-10	전	1	1	강대완	제천시 서부동 1209				
118	"	51-3	대	98	1	공	원주시				
119	"	81-5	대	569	4	임병무	가현동 81-5				
120	"	122-2	대	257	1	신홍환	원주시 혁신로91, 504동703호				
계				320,808	11,389						

■ 지장물조서(변경없음)

순번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단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원주시 가현동 128-12	바닥포장	콘크리트	154	㎡	강문식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71, 엘지에크라트 902호				
						유관열	원주시 포란재로36 102동 803호				
	"	집수조		1	식	"	"				
						"	"				
	"	철제울타 리	H=1.8m	6	m	"	"				
						"	"				
	"	철제울타 리	H=1.8m	5	m	"	"				
						"	"				
	"	울타리		13	m	"	"				
						"	"				
	"	배나무		3	주	"	"				
						"	"				

강릉시 고시 제2022-210호

강릉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릉시 고시 제2006-132호(2006. 12. 22.)로 최초 결정된 강릉시 대전동 74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부지 내 편입된 구거 용도폐지 및 대체시설 설치에 따른 면적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033-640-5243)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고시된 사항은 토지e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10일

강릉시장

가. 결정취지

- 부지 내(도시계획시설) 편입된 구거를 용도폐지하고, 대체시설 설치를 통해 관리청에 관련 토지 및 시설물 이관에 따른 면적감소

나. 위 치: 강릉시 대전동 745번지 일원

다.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붙임 1』 참조

라.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실음생략

[별첨 1] 강릉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1)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대전동 745번지 일원	34,85.	감)713	34,140	강릉시고시 제2006-132호 (06. 12. 22.)	

나)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폐기물처리시설	• 면적변경(경미한 변경) - 위치: 강릉시 대전동 745번지 일원 - 면적: 34,853㎡ → 34,140㎡ 감)713㎡ (2.05%)	• 부지 내(도시계획시설) 편입된 구거를 용도폐지하고, 대체시설 설치를 통해 관리청에 관련 토지 및 시설물 이관에 따른 면적감소

강릉시 고시 제2022-21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

강릉시 지변동 673번지 일원 공동주택 아파트 신축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1차)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0일

강릉시 장

1. 사업의 명칭: 강릉 지변동 67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 서남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가. 위 치: 강릉시 지변동 673번지 외 24필지
 - 나. 규 모
 - 1) 대지면적: 12,078㎡
 - 2) 연 면 적: 44,415.4697㎡
 - 3) 주택형별: 아파트 176세대
 - 4) 사업규모: 지하2층, 지상 19~25층
 - 5) 사 업 비: 108,644,499천원
 4. 사업시행기간: 2022. 9. 1. ~ 2024. 11. 30.
 5.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 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제56조 개발행위허가, 제86조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 다.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변경) 협의
 6. 사업계획 변경내용:
 - 가. 사업주체 및 사업기간 변경
 - 나. 분할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및 대지경계 변경
 - 다. 대지경계 변경으로 인한 주동위치 이동
 - 라. 인테리어 변경에 따른 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경
 - 마. 대지 경계 변경으로 인한 옹벽 변경 및 조경석 추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주택과(☎640-5263) 및 도시과(☎640-536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협의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협의 조서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지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릉시 지변동 673번지 일원	12,479	감) 35	12,444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1	강릉시 지변동 673번지 일원	12,479㎡ → 12,444㎡ 감) 35㎡	·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479	감) 35	12,444	100.00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별 편입 면적을 기재한 사항으로 용도지역은 변경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45	8~ 10.2 (2.2)	국지 도로	141 (82)	대로 2-3	소로 2-246	일반 도로	-	강릉시고시 제94-217호 (1994. 11. 8.)	
기정	소로	3	382	4	국지 도로	45	소로 2-248	지변동 674-11	일반 도로	-	강릉시고시 제2021-299호 (2021. 11. 4.)	

주) ()안은 사업지구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245	소로 2-245	· 편입면적 변경 - 127㎡ → 131㎡, 증)4㎡	·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소로 3-382	소로 3-382	· 편입면적 변경 - 191㎡ → 188㎡, 감)3㎡	·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2,479	감) 35	12,444		12,479	감) 35	12,444	
-	A	12,116	감) 38	12,078	강릉시 지변동 673번지 일원	12,116	감) 38	12,078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	D1	191	감) 3	188	강릉시 지변동 673번지 일원	191	감) 3	188	· 주택 진,출입로(소3-382) ·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	D2	127	증) 4	131	강릉시 지변동 671-1번지 일원	127	증) 4	131	· 주출입구(소2-245) ·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	D3	45	증) 2	47	강릉시 지변동 675번지	45	증) 2	47	· 보행 및 비상차량 출입구 (소2-248) ·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아파트 (A)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25층 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차량 출입구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소로 2-245호선변	· 차량 출입구(1개소)	단지내 도로와 연계
-	소로 2-248호선변	· 보행 및 비상차량 출입구(2개소)	단지내 보행로와 연계

나) 공공보행통로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소로 2-245호선변	· 소로2-245호선변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원 2m의 항시 개방된 형태로 조성	
-	소로 2-248호선변	· 소로2-248호선변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원 2m의 항시 개방된 형태로 조성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접수에 따른 의제 협의

- 지변동 673 일원 공동주택 -

1.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릉시 지변동 67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245호선 외 2개 노선)사업
- 2) 사업의 명칭: 도시계획시설(소로2-245호선, 소로2-248호선, 소로3-382호선)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2	245	8~10.2 (2.2)	국지 도로	141 (82)	대로2-3	소로2-246	일반 도로		폭원확장 (L=82.0m)
기정	소로	2	248	8	국지 도로	183 (139)	소로2-243	소로2-245	일반 도로		도로개설 (L=139.0m)
신설	소로	3	382	4	국지 도로	45	소로2-248 지변동675	지변동674-11	일반 도로		도로신설 (L=45.0m)

※ ()은 금회 시행분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기정)㈜퍼스트에버개발 대표 최인순
(변경)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 서남중

- 2) 주소: (기정)강원도 강릉시 경포로15번길 6-19
(변경)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실시계획인가일	2024. 12. 31.	

바. 자금조달계획

1) 소요자금(투자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자금				비고
	계	소로2-245호선	소로2-248호선	소로3-382호선	
합계	626	237	217	172	
토지보상비	257	127	-	130	
도로공사비	369	110	217	42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백분율 (%)	소요자금				비고
		계	소로2-245호선	소로2-248호선	소로3-382호선	
합계	100.0	626	237	217	172	
2022	41.0	257	127	-	130	토지매입
2023	59.0	369	110	217	42	공사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도로 무상귀속분

구분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시설내용	면 적	비 고
기정	도로	소로2-245호선	L=82.0m, B=2.2m	124㎡	도시계획도로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변경	도로	소로2-245호선	L=82.0m, B=2.2m	131㎡	
기정	도로	소로2-248호선	L=139.0m, B=8.0m	1,137㎡	
기정	도로	소로3-382호선	L=45.0m, B=4.0m	188㎡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1) 소로2-245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공부 면적	편입계	성 명	주 소	
합 계				6,325	124	—	—	
합 계				131	131			
1	지변동	671-5	답	287	10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	지변동	671-7	답	10	1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2	지변동	670-11	답	388	12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2	지변동	670-16	답	13	13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3	지변동	672	대	660	19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3	지변동	672-5	대	20	2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4	지변동	671-1	대	1,749	29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4	지변동	671-6	대	30	3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5	지변동	670	대	697	19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5	지변동	670-13	대	20	2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6	지변동	670-10	대	147	5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6	지변동	670-15	대	5	5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7	지변동	670-8	대	364	29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7	지변동	670-14	대	29	29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8	지변동	675	도	2,033	1	농림축산식품부	국	
8	지변동	675-4	도	4	4	농림축산식품부	국	

2) 소로2-248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공부 면적	편입계	성 명	주 소	
합 계				48,950	1,137	—	—	
합 계				47,787	1,137			
1	지변동	527-1	구	46,917	629	농림축산식품부	국	
1	지변동	527-1	구	46,162	629	농림축산식품부	국	
2	지변동	675	도	2,033	508	농림축산식품부	국	
2	지변동	675	도	1,578	461	농림축산식품부	국	
3	지변동	675-3	도	47	47	농림축산식품부	국	

3) 소로3-382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공부 면적	편입계	성 명	주 소	
합 계				50,960	188	—	—	
합 계				188	188			
1	지변동	527-1	구	46,917	23	농림축산식품부	국	
1	지변동	527-6	구	22	22	농림축산식품부	국	
2	지변동	673	답	2,010	148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2	지변동	673	답	149	149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3	지변동	675	도	2,033	17	농림축산식품부	국	
3	지변동	675-2	도	17	17	농림축산식품부	국	

강릉시 공고 제2022-1320호

주문진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6호광장) 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소유자 등 의견 청취 열람 · 공고

강릉시 고시 제2022-79호(2022. 4. 1.)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된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99-1번지 일원 “코아루 휴티스 디오션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주문진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6호광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기 전 주민 의견 수렴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8일

강 릉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 위치: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99-4번지 외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강릉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6호광장)사업
- 2) 명 칭: 교통광장(6호광장) 개선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 설 명	명 칭	위 치	결정면적 (㎡)	고시번호	편입면적 (㎡)	비 고
교통광장	6호광장 (교통광장)	영진리 산32번지 일원	49,049	강릉시고시 제2010-89호 (2010. 8. 25.)	250	금회 시행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 2) 성 명: ㈜한국토지신탁 대표 최 윤 성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2023년 07월 31일

바. 자금조달계획

1) 소요자금 내역(총사업비: 87,200,000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자금	비고
합 계	87.20	
토 지 매 입 비	-	
개 설 공 사 비	87.20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시설 내용	비고
교통광장	6호광장	L=98m, B=1.5~4.0m, A=250m ²	교통광장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무상귀속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순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3,207	250			
1	영진리 299-4	도	2,333	179	국(건설부)		
2	영진리 305-23	도	155	10	국(건설부)		
3	영진리 305-24	답	234	47	국(건설부)		
4	영진리 305-25	도	485	14	국(건설부)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2. 8. 18. ~ 2022. 9. 1.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강릉시청 도시과(6층)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도시과(☎033-640-5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건 서

① 건 명	주문진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6호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소유자 등 의견청취 열람·공고		
② 열람의견관련토지	토 지 소 재 지		지적
			지목
③ 의 건 제 출 인	성 명	(인)	소유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④ 의 건			

영월군 공고 제2022-1104호

영월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완료 공고

영월군고시 제2022-139호(2022. 8. 1.)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영월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의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완료공고 합니다.

2022년 8월 10일

영 월 군 수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376-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영월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명칭: 영월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1단계 사업)

다) 사업시행의 면적 및 규모

- 수도공급설비 A=4,66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

- 성 명: 영월군수(상하수도사업소)
- 주 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93

마) 사업기간

- 착수일: 인가일로부터
- 완료일: 2026. 12. 31.

영월군 공고 제2022-1106호

영월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2단계 사업) -

1. 강원도 고시 제1996-170호(1996. 9. 30.)로 최초 결정되고, 영월군 고시 제2022-139호(2022. 8. 1.)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영월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영월군청 도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서류는 영월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8월 10일

영 월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376-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영월 군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
- 명칭: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2단계 사업)

3. 사업시행의 면적 및 규모

- 토지이용현황

(단위: m²)

구분	당 초(1단계 사업)					변 경(2단계 사업)				
	계	전	도로			계	전	도로	수도	임야
필지수	2	1	1			4	1	1	1	1
지목별	4,669	4,623	46			7,915	4,623	46	2,274	972
이용현황	주천정수장 현대화 A=4,669m ²					전체 7,915m ² / 금회 주천정수장 증설 A=3,246m ²				
구성비(%)	100 %					41.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93
- 성 명: 영월군수(상하수도사업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202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²)		소 유 자		비 고
					지적	편 입	성 명	주 소	
계	기정	총 2개 필지			7,855	4,669			
	변경	총 4개 필지			11,816	7,915			
1	기정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376-19	전	4,990	4,623	영월군		
	변경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376-19	전	4,990	4,623	영월군		
2	기정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376-5	도	2,865	46	영월군		
	변경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376-3	도	2,865	46	영월군		
3	기정	—	—	—	—	—	—	—	
	변경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376-6	수	2,989	2,274	영월군		
4	기정	—	—	—	—	—	—	—	
	변경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376-18	임	972	972	영월군		

7. 관련도면: 실음생략(도시교통과 비치)

8. 공람기간: 14일간.

평창군 고시 제2022-133호

평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평창군고시 제2022-55(2022. 4. 22.)호로 평창 군계획시설(도로: 진부 중로2-2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및 제30조제6항 따라 실시계획(변경)에 반영된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8월 19일

평 창 군 수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승인]

1.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	6~15	보조 간선 도로	580	하진부리 1289-9	중로1-4 하진부리 20-7	일반 도로		강고 1999-182호 (1999. 11. 4.)	진부 도시지역
변경	중로	2	2	8~15	보조 간선 도로	580	하진부리 1289-9	중로1-4 하진부리 20-7	일반 도로		강고 1999-182호 (1999. 11. 4.)	진부 도시지역

(2)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2	중로2-2	○ 선형 변경 - 면적:7,359㎡→8,162㎡(증803㎡)	○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평창군고시 제 2022-55호)에서 지형사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

2. 평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도: 실음생략(평창군청 도시과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 고시 제2022-134호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평창군고시 제2022-55(2022. 4. 22.)호로 평창 군계획시설(도로: 진부 중로2-2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일부가 실시계획이 폐지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항 제2호에 따라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제88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9일

평 창 군 수

가. 군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	6~ 15	보전간 선도로	580	하진부리 1289-9	중로1-4 하진부리 20-7	일반도로	강고 1999-182호 (1999. 11. 4.)	진부 도시지역
변경	중로	2	2	6~ 15	보전간 선도로	556	하진부리 1289-114	중로1-4 하진부리 20-7	일반도로	강고 1999-182호 (1999. 11. 4.)	실시계획 폐지구간의 실효

나. 실효일자: 2022. 4. 22.

다. 실효사유: 해당 시설의 일부가 실시계획이 폐지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항제2호에 따라 실효됨

라. 지형도면: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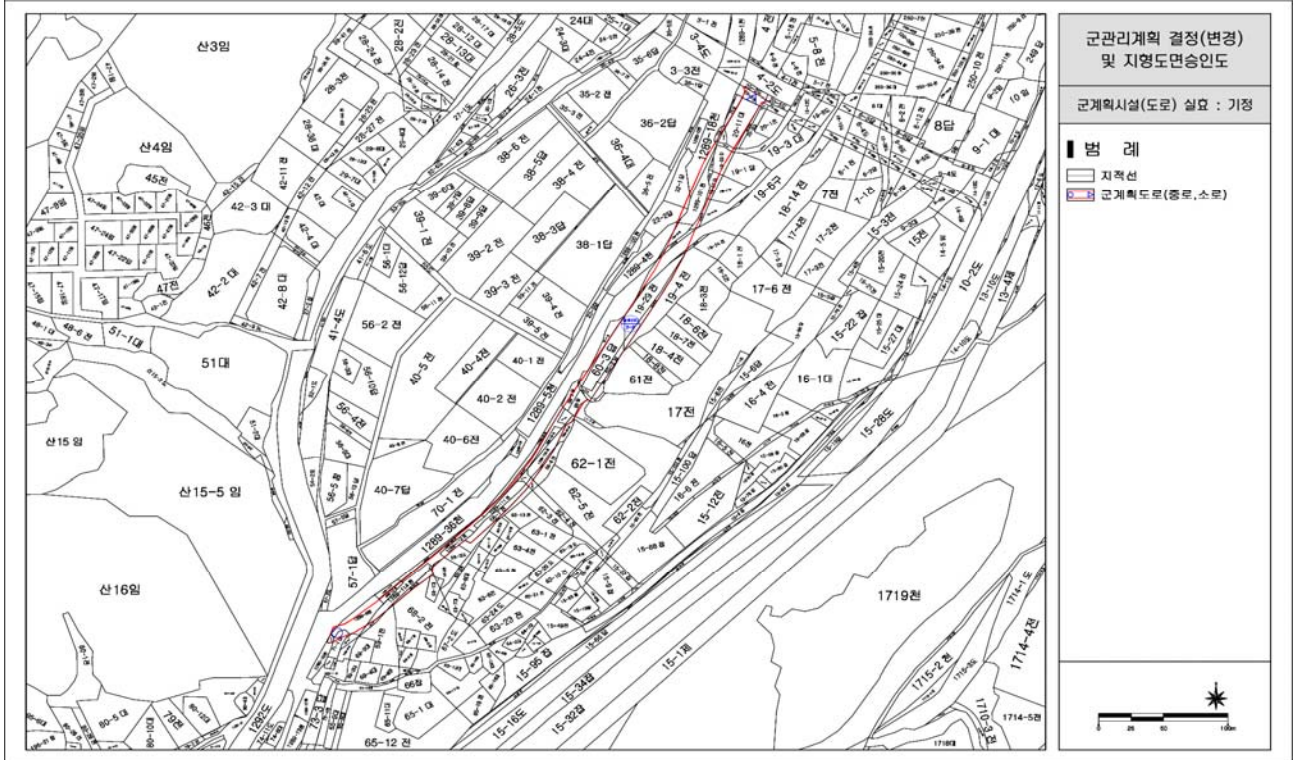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 관계도서는 평창군 도시과(☎ 033-330-20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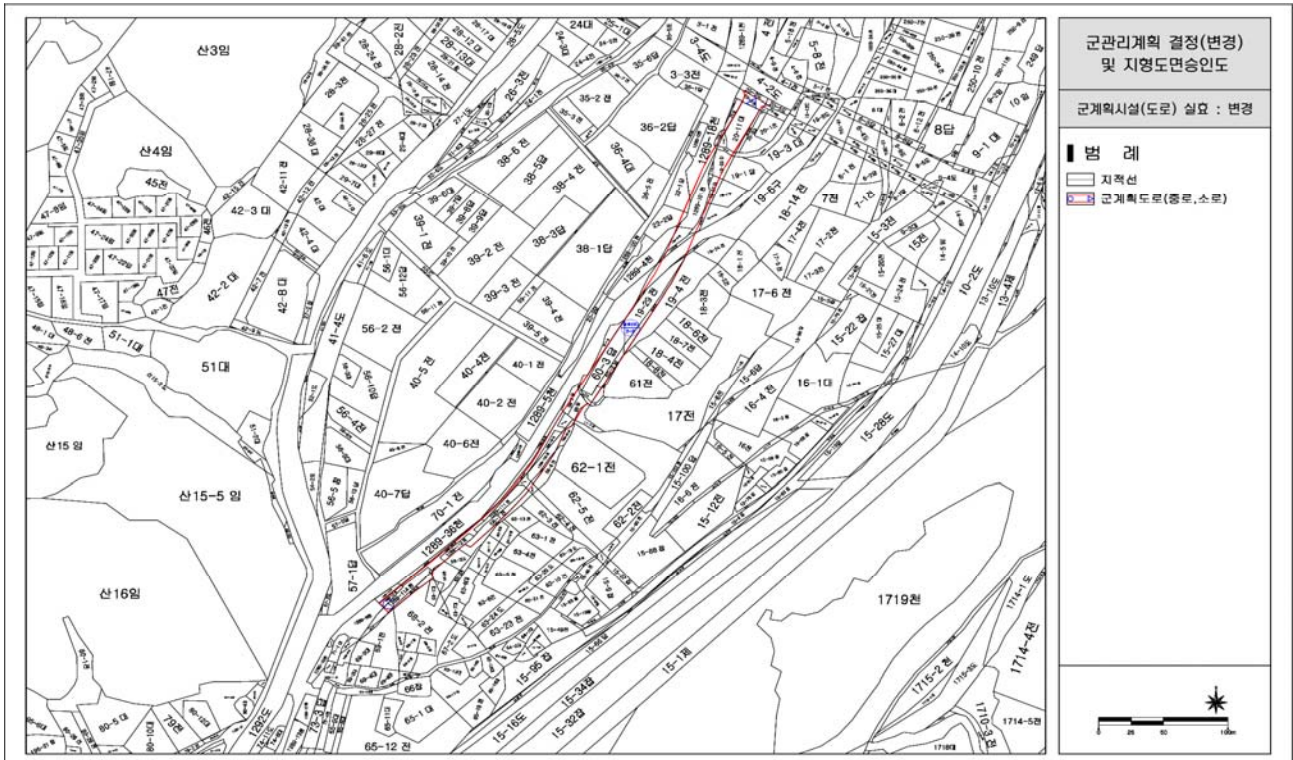
[붙임]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실효 지형도면승인도

- 기정



- 변경



고성군 고시 제2022-155호

고성 군관리계획(항만)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군계획시설(항만: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사업)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항만)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 건설도시과(도시계획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또한, 고성 군계획시설(항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고 성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의 현대적 시설개선을 위하여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군관리계획 결정(가진항 세부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군관리계획(항만: 가진항) 결정(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5	가진항	항만	죽왕면 가진리 46-3번지 일원	13,325	-	13,325	2010. 6. 25.	

2) 항만 세부시설 결정(변경)

구 분	시 설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325	－	13,325	
기본시설	소 계	5,018	－	5,018	
	① 하역장	1,265	－	1,265	
	⑭ 제방	3,753	－	3,753	

구 분	시 설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능시설	소 계	6,910	감) 372	6,538	
	② 주차장	1,563	감) 194	1,369	
	③ 도로	1,577	—	1,577	
	④ 어구건조수리장	243	—	243	
	⑤ 야적장	—	—	—	
	⑥ 급수·급방·급유시설	77	—	77	
	⑦ 수산물위판장	1,250	—	1,250	
	⑧ 수산물유통·판매시설	2,089	감) 178	1,911	
	⑨ 선박출입항신고기관 및 어업인 휴게시설	111	—	111	
어항편익시설	소 계	1,397	증) 372	1,769	
	⑪ 복지회관	477	—	477	
	⑬ 광장	888	증) 372	1,260	
	기타	32	—	32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종류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5	가진항	항만	· 세부시설 변경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 및 그에 따른 세부시설 변경

4) 고성 군관리계획(가진항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실음생략

다. 실시계획 인가 조서

1) 사업시행지 위치: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46-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군계획시설(항만: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사업) 사업
- 명칭: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고성군수
- 주 소: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단위: m²)

시 설 명	위 치	총 결정면적	기시공	금회시공	미시공	최초 결정일
항만 (가진항)	죽왕면 가진리 46-7번지 일원	13,325	13,325	1,911	-	2010. 6. 25.

※집행완료된 시설로 금회시공면적은 금회사업면적을 기재함.

- 사업규모

- 건축물 증축: 건축면적 및 연면적(A) = 316.99m²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고시일 ~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예상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소 계					1,911						
1	죽왕면 가진리	46-7	잡	3,234	1,911	강원도	국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고성군 공고 제2022-876호

고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고성경찰서 증축공사) 사업 공사완료 공고

고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고성경찰서)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고 성 군 수

가. 사업시행지 위치: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34-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고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고성경찰서 증축공사) 사업
- 명 칭: 고성경찰서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단위:m)

사 업 명	위 치	총 결정면적	기 시 공	금회시공	미시공
고성경찰서 증축공사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34-2번지 일원	13,991	13,991	96.54	-

- 건축개요

구 분	규 모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륜
장애인 승강기 및 호송차고 증축	1,537.52㎡ (증:58.73㎡)	4,131.34㎡ (증:96.54㎡)	11.11%	25.5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고성경찰서
- 주 소: 고성군 간성읍 탑동길 12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착공일: 2022. 2. 11.
- 준공일: 2022. 6. 30.

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고성군 공고 제2022-884호

고성 군계획시설(항만: 봉포항 어업인대기소 신축공사) 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1. 고성 군계획시설(항만)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군 계획시설(항만)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실시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2일

고 성 군 수

가. 사업시행지 위치: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고성 군계획시설(항만: 봉포항 어업인대기소 신축공사) 사업
- 명칭: 봉포 어촌계 어업인대기소 신축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고성군수
- 주 소: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단위: m²)

사 업 명	위 치	총 결정면적	기시공	금회시공	미시공	최초 결정일
봉포항 어업인대기소 신축공사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7번지	27,106	27,106	107.82	-	2010. 6. 25.

※ 집행완료된 시설로 금회시공면적은 금회신축면적을 기재함.

○ 사업규모

－ 어업인대기소 신축(1동, 1층): 건축면적 및 연면적(A) = 107.8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고시일 ~ 2023. 6.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예상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필지	107.82						
1	토성면 봉포리	1-7	잡	8,220	107.82	고성군	공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아. 열람의 기간 및 장소

○ 기간: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장소: 고성군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 680-3435, 팩스 680-3179)

양양군 고시 제2022-186호

양양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양양군 고시 제2021-213호(2021. 10. 8.)호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된 “현남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포함하여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양 양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가.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공공 · 문화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A	체육시설	현남면 창리 36번지 일원	25,913	감) 145	25,768	양양군고시 제2021-213호 (2021. 10. 8.)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체육시설	- 변경 (감: 145㎡) - 면적: 25,913㎡ → 25,768㎡	실시설계에 따른 면적 감소

나.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실음 생략

2.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양양군 현남면 창리 3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양양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 명 칭: 현남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시 설 명	결정현황	기 시 공	금회시공	이후계획	비고
	현남 생활체육시설	25,768㎡	-	25,768㎡	-	-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양양군수(문화체육과장)
- 주 소: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현남면 인구리	11-4	임	10,552	9,942	양양군	-	
2	현남면 인구리	23-3	학	244	240	양양군	-	
3	현남면 인구리	25	전	704	704	양양군	-	
4	현남면 인구리	26-7	대	549	238	양양군	-	
5	현남면 창리	35	전	1,660	1,660	양양군	-	
6	현남면 창리	36	임	6,975	6,975	강원도	-	
7	현남면 창리	37	전	694	694	양양군(1560/1976)	-	
						박종운(416/197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남9길5(석전동)	
8	현남면 창리	38	임	324	324	양양군	-	
9	현남면 창리	39	전	1,031	1,031	양양군	-	
10	현남면 창리	40	전	823	823	양양군	-	
11	현남면 시변리	41-9	임	2,826	2,826	양양군	-	
12	현남면 시변리	50	전	311	311	양양군	-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